

중부지역 집중호우 재난 상황에서의 재난피해자 및 재난약자 보호와 시민사회의 역할

- | 일 시 | 2017. 8. 29 (화) 13:30 ~ 17:00
- | 장 소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대학원 세미나실
- | 공동주최 | [사]이재민사랑본부 재난관리연구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 공동주관 | 충남연구원,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NGO센터,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중부지역 집중호우 재난상황에서의 재난피해자 및 재난약자 보호와 시민사회의 역할

□ 세미나 개요

- 주 제 : 중부지역 집중호우 재난 상황에서의 재난피해자 및 재난약자 보호와 시민사회의 역할
- 일 시 : 2017. 8. 29(화) 13:30 - 17:00
- 장 소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대학원 세미나실(3층, 307호)
- 공동주최 : (사)이재민사랑본부 재난관리연구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공동주관 : 충남연구원,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NGO센터,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세션별 시간 및 발표 주제

시 간	소요	주요내용	발표자	비고
13:30~14:00	(30)	등 록		
14:00~14:10	(10)	개 회 사 인사말씀	이재은 소장 김원용 상임회장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평주 사무처장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 조성 박사
제1세션 재난피해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 (14:10~15:40)				
14:10~15:40	(90)	좌장 : 이장희 교수 (충북대학교)		
		발표 1. 중부권 집중호우와 시민사회 역할	박연수 사무처장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표 2. 집중호우 발생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 천안시 사례	조성 박사(충남연구원)	
		토론 : 송재봉 센터장(NGO 센터), 최윤정 사무처장(충북청주경실련, 충북시민사회 단체연대회의), 조동욱 교수(충북도립대학교), 류상일 교수(동의대학교)		
15:40~16:00	(20)	휴식		
제2세션 재난과 재난약자 보호 (16:00~17:30)				
16:00~16:50	(50)	좌장 : 양기근 교수 (원광대학교)		
		발표 1. 대형재난에 따른 재난약자 현황 및 일본사례 실증분석	이재은 교수(충북대학교) 김가희 연구원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발표 2. 장애인 생활안전에 관한 연구	두오균 박사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토론 : 김학실 교수(충북대학교), 유현정 교수(충북대학교)		
16:50~17:00	(10)	정리 및 폐회		

목 차

제 1 세션 재난피해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

- 1. 중부권 집중호우와 시민사회 역할 3
 - 박연수 사무처장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 2. 집중호우 발생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 천안시 사례 27
 - 조성 박사 (충남연구원)
-

제 2 세션 재난과 재난약자 보호

- 1. 대형재난에 따른 재난약자 현황 및 일본사례 실증분석 45
 - 이재은 교수 (충북대학교)
 - 김가희 연구원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2. 장애인 생활안전에 관한 연구 61
 - 두오균 박사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
-

제 1 세션 재난피해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

① 중부권 집중호우와 시민사회 역할

박 연 수 사무처장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물바다가 되었어요.’

SKT 62% 오후 5:35

← 태준 게시물에서 검색

김태준님이 새로운 사진 5장을 추가했습니다 - 충청북도청에서

7월 16일 오전 11:05

도청주차장까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역류중입니다.



장래정님 외 44명

댓글 2개 · 공유 1회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장래정 1/2

← 태준 게시물에서 검색

김태준님이 새로운 사진 2장을 추가했습니다

제 1분관교상행입니다

얼마나 비타는지..



저장

← 태준 게시물에서 검색

김태준님이 새로운 사진 2장을 추가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

현재 청주 무심천 상황..

범람위험이 커졌습니다.



장래정님 외 44명

댓글 2개 · 공유 1회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장래정 1/2

3

‘자동차에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이경희

7월 16일

청주에 비가 많이 옵니다. 중대정문, 하북대 등 도로가 잠기거나 자동차에 물이 차오르는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장암장성동 농배수로 공사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받았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벌써 몇시간동안 많은비가 내리네요. 지난번 토사가 흘러내리던 절개사면도 갑자기 걱정되는군요.

이럴때 서로간의 정보가 필요 합니다. 폐북에 근처의 상황을 올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새벽부터 하늘만 쳐다보는 중입니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피클님, 김태준님, 정동민님 외 145명

공유 2회

댓글 37개 더 보기

강성호



좋아요 · 댓글 달기 1 · 7월 16일 오후 12:40

강성호



좋아요 · 댓글 달기 1 · 7월 16일 오후 12:41

김창성 할나소

좋아요 · 댓글 달기 1 · 7월 16일 오후 1:37

조양익 큰 피해가 없기를...

좋아요 · 댓글 달기 1 · 7월 16일 오후 7:18

이경희님이 새로운 사진 9장을 추가했습니다.

7월 16일

장암, 장성동 일부는 침수. 장암교 밑 마을 물에 잠김. 장성동 경로당앞 뽕나무 내려오고 있음. 무심천 하상도로와 같은도로 물에 잠겼으며 장암교 물 차오르는 수위가 위험해 보임.



5장+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김태준님, 정동민님 외 89명

댓글 2개 더 보기

박수현 지금상황안가요?

전 부여시역인데 걱정되어서요.

좋아요 · 댓글 달기 2 · 7월 16일 오전 9:44

4

'119 연결이 안돼요.



영우 7월 10일 · 🌐
지금 중북대 정문 상황입니다. 차 세대 이상이 침수되어 있는데 사람은 빠져나왔는지도 모릅니다. 119 연결이 안됩니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최원님, 김태준님, 이두경님 외 143명

공유 2회

댓글 3개 더 보기

오복수 우와 시내도 말이 아니구먼
좋아요 · 댓글 달기 · 7월 16일 오후 11:24

영우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 댓글 1개

김태준 예고 뉴스보나 피자가 많구나만데 부디 별일 없길 바래요~
좋아요 · 댓글 달기 · 7월 16일 오후 11:59

영우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 댓글 1개

정은경 선생님 황금 89 장은갑니다 매제자 보냈는데 한번 봐주세요
좋아요 · 댓글 달기 · 7월 26일 오전 8:50

영우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 댓글 1개

정환희 멋진 표정 보내세요안
좋아요 · 댓글 달기 · 8월 6일 오전 11:27



이재표님이 새로운 사진 3장을 추가했습니다.

7월 16일 · 🌐

북대동 열지로 침수통제..
다 빠져나온 무렵 길을 막기에 욕이 나왔는데
병글병글 톨다 나오니 도로 그 자리..
욕할 상황이 아니구나.. 비상사태
가장전도 찰랑찰랑 ㅠㅠ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5

'2017 중부권 집중호우



송태호님이 과산 산막이옛길에 있습니다.

7월 16일 · 🌐

과산담 하류
산막이 옛길 입구 수전교 현재모습
담쪽은 접근불가. 위험하여 통제중입니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최원님, 김태준님, 원지연님 외 39명

댓글 4개 더 보기

손용빈 방류중이라는 방송보도 맞는거죠? 비가 멈추더라도 물이 모이는 곳이라, 대피령 소식에 상황 전해듣느라 신경이 곤두서있어요.
좋아요 · 댓글 달기 · 7월 16일 오후 4:24

송태호 웅빈씨 담 바로 아래는 접근불. 나무사이로 보이는 담 물폭탄이 무서워.
좋아요 · 댓글 달기 · 7월 16일 오후 5:32

송태호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 댓글 2개



박원희님이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7월 16일 · 🌐



조회 273회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김태준님, 김지현님 외 26명

관련성 높은 댓글

박원희 0:00 이번 장주에 내린 비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네요.
좋아요 · 댓글 달기 · 7월 16일 오후 6:12

6

자! 신나게 놀아봐요~~



7

하늘 뚫린 청주

최신기사

오르락내리락 물폭탄 중부 강타...하늘 뚫린 청주 22년 만의 홍수

출고시간 : 2017/07/18 17:29



출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창주에 22년 만에 최초의 흑마사지인 1818 종마사지 3대전과 이호진 일대기 등이 함께 담겨 있다.
2017.7.14 [연합뉴스TV채널] photo@yna.co.kr

청주시내 온통 물바다. 한때 하천을 일제 범람 위기에 주안 대피령
집도로-결로농경지 침수, 산사태-정전...곳곳 구조요청 해도
천안-경북북부 '옥대밭'...잠마전선 스쳐간 경가-인찬-전북도 피해

(전국종합 = 연합뉴스) 7월 셋째 주말인 16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집, 도로, 농경지 곳곳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속출했다.

(정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는 16일 오전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22년 만에 290mm의 비가 내린 청주는 오후 들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무심천 등 주요 하천이 범람 위기를 넘겼다.



원주 석남현

청주시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청주에는 289.9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우암산에는 274mm, 상당구에는 260.5mm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청주에는 기상관측 이래 두 번밖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이다. 1995년 8월 25일 293mm가 내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이다.

8

16일 쏟아진 청주 물폭탄...곳곳서 피해 속출

f 9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청주 16일 2017 07 16 15:13:00

최종수정 2017 07 16 15:13:00



· 비를 쏟아진 뒤 폭우로 이어져 물이 도로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전국뉴스



· 한강 침수된 차량을 인양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뉴스

물 폭탄



9

청주 물폭탄

충청일보

청주 물폭탄으로 침수된 차량

권보람 기자 | stranger0213@naver.com

2017 07 16 16:36:40

16일 오전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일대가 물에 잠겨 상점과 차량이 침수됐다. /권보람기자



충청일보

충청일보

물에 잠긴 예술의 전당 앞 도로

전국뉴스

2017 07 27 13:37:00



쏟아진 물폭탄으로 27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앞 사거리가 물에 잠겨 차량 통행이 정지되고 있다.

10

[청주피해]물폭탄이 지나간 청주무심천

2017년 07월 17일 (월) | 김용수 기자



[청주피해]물폭탄이 지나간 청주무심천

지난 16일 청주에 시간당 91.8mm 이상의 비가 내리며 '물폭탄'이 쏟아져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범람위까지 수위가 올라갔던 청주 무심천(왼쪽, 16일 오후 촬영)이 17일 수위가 내려가면서 재 모습을 찾았으나 시설물이 부서지고 부유물들이 곳곳에 깔려 있다. 지난 16일 불어난 물에 떠내려 온 대형트럭이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김용수

11

청주 22년만의 물폭탄

2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청주지역 22년만에 물폭탄

충청타임즈



중원고 중원을 보강한 비상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수십대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잠겼다.



16일 청주시지역에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무심천이 한때 범람위기에 처했다.



16일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된 청주시 북대동 저지대에서 119구급대가 고립 주민 구출에 나서고 있다. /시민제공



청주시 문진동의 주택가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가운데 한 주민이 불바다가 된 집을 보며 당연 자살한 표정을 짓고 있다. /유대중기자

12

(사)이재민사랑본부 긴급 이사회

한인섭
우암산터널좌측 산사태 차량통제
1시간전상황입니다
오후 1:01

방영란
어떡해요...빨리 조치해야겠네요
오후 1:01

김검훈(바람난 철새)
엄청나군요. 부디 많은 피해 없기를...
우리 이재민사랑본부가 나서야 할
때인듯 합니다.
오후 1:01

소강상태 이젠는 복구가 필요한 시
점입니다
오후 1:21

이재은
긴급 운영이사회를 개최해서 논의
를 하시면 어떨까요?
오후 1:34

오늘 저녁 7시 산남동 토담순대에서
긴급 운영이사회 및 한여름 밤의 화
이트 크리스마스 운영 결과 협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함께해주
시죠
오후 2:29

조미정
넵
참석하겠습니다
오후 2:31

이재은
옹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오후 2:32

한인섭
넵
오후 2:53

신명례
참석할게요
오후 3:50

13



김검훈(바람난 철새)

(사)이재민사랑본부는 2017. 7. 1
6. 19:00부터
긴급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공동으로
이번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재난피
해자
돕기 긴급구호활동을 하기로 결정
함.

첫째, 컨트롤타워는 박연수(010-8
840-8848)
대표가 맡기로 하다.

둘째,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
하는
긴급재해구호물품은 충북대평생
교육원
(서원구 수곡동 구룡산로 351)에
보관하고
절자에 따라 배분기로 하다.

셋째,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제공
하는
<자동세탁봉사차량>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긴급 모집기로 하다.

추신: 이재민사랑본부와 함께 하
실
단체 및 기관은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2017. 7. 16. 20:00

(사)이재민사랑본부 긴급운영이
사회

오후 8:06

긴급구호활동 결정



김검훈(바람난 철새)

(사)이재민사랑본부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공동으로 모
집한
내일(17일) 자동세탁봉사차량에서
자원봉사자실 본 12명의 모집이
막 완료되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감사드립니다. ^^

오후 9:56



김가희

이재민사랑본부 긴급구호물품 지
원현황 표입니다.



엑스더

호계리는 9시30분!왜약속이11시
로
변경된겁니까? 알겠습니다!
저는호계리로가려고했는데...

오전 8:56

예 늦추어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전 9:01



엑스더

강서1동농민
피해가심각하다네요.
긴급구조물품 강서1동물어가있는
지요?

오전 9:04

14

전국재해구호협회 긴급구호물품 확정

김경훈(바람난 철새)
(사)이재민사랑본부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공동으로 모집한 내일(17일) 자동세탁봉사자랑에서 자원봉사하실 분 12명의 모집이 막 완료되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감사드립니다. ^^
오후 9:56

이재은
오케이^^ 수고 많았네 ~~
오후 10:35

이재은
주재현이사님 공장도 피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
오후 10:36

우리 주이사님 공장 복구하러 가야겠어요.
오후 11:05

김경훈(바람난 철새)
재정합니다. ^^
오후 11:14

에스더
동의합니다!!
오후 11:16

이재민사랑본부 전국재해구호협회 긴급구호물품 지원현황				(함양장고)
품목		수량	비고	
생수		3,295	생수박스(1박스=6병)	
제육볶음	남	대	120	
		중	180	
		소	120	
	여	대	120	
		중	180	
		소	120	
팬티런닝	남	대	100	
		중	100	
		소	100	
	여	대	100	
		중	100	
		소	100	
양말	남	400		
	여	400		
수건2매		480		
수건1매		-		
칫솔		800		
에어베개		400		
화장지각티슈		4,000		
화장지 롤		-		
모포		400		
비누		480		
합계		12,095		

15

내덕동 덕벌초, 오송 호계리 빨래봉사

에스더
호계리는 9시30분!왜약속이11시로 변경된겁니까? 알겠습니다!저는호계리로가려고했는데...
오전 8:56

에 늦추어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전 9:01

에스더
강서1동농민 피해가심각하다네요 긴급구조물품 강서1동들어가는지요?
오전 9:04

신명례
저는 덕벌초 가는중입니다
오전 9:26

JH.Lee
고생 많으세요 함께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전 9:27



16

빨래봉사



17

구호물품 도착 7월 17일 새벽



이재은

지금 충북대 평생교육원에 긴급 구호물품을 내리고 있습니다



18

호계리 마을 긴급구호물품 전달



호계리 마을 긴급구호물품 전달

호계리 인구 115명
침수가옥이 10집
외국인노동자 20여명
경로당에서 숙식하고 있는
지동위에서 구조받은
어르신 사진입니다
지금 세탁차기 다리는 중
이상 호계리입니다

오전 10:39

이재은
혹시 생수나 에어배개, 추리닝, 속
옷 등이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전 10:40

에스더
네~필요합니다
이불도 필요하네요

오전 10:41

송태호님이 박연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7월 17일 · 📍

수재민 구호물품 전달

녹색청주협의회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오송읍 호계리 수해를 입은
주민들께 수재민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윤여표 총장과 박
연수 대장이 함께하며 수해를 입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호계리는 병천천 하류
에 있는 마을로 두곳이 범람하며 수해가 큰 곳입니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 회원님, 김태준님, 이두영님 외 66명

댓글 2개 더 보기

Mingmar Sherpa 수고 많습니다 대장님!

7월 18일 · 📍

19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합류

송재봉님이 새로운 사진 5장을 추가했습니다.

7월 18일 · 충청북도 청원 · 📍

오늘은 이재민사랑본부와 충북연대회의 회원들과 함께 주역이 침수된 청주역
 인근 지역을 방문해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침수된 가족의 집안정리와 가구등
을 정리하며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청주시의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해서 도민의 손길이 필요한 적재소에 자원봉사자가 적절
하게 배치될수 있었으면합니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 김태준님, Jung Yoon Oh님 외 147명

댓글 5개 더 보기

최호준 수고들 하셨습니다

좋아요 · 댓글 달기 · 1 · 7월 18일 오후 3:49

이선영 애쓰셨습니더^^

좋아요 · 댓글 달기 · 1 · 7월 18일 오후 7:28

이선영 구슬땀이 어은 주민분들에게 위로가 되었거예요^^

최천아

7월 18일 · 📍

청주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충북연대회의 활동가들과
각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남일면, 강서동, 옥산 지역으로 갑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님이 새로운 사진 3장을 추가했습니다.

7월 18일 · 📍

👍👍👍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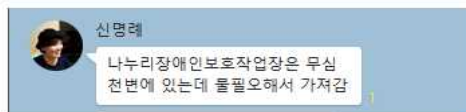
20

강서 송곡그린아파트, 정봉



21

‘나누리 장애인 보호 작업장 19일



22

남일면 송암리를 넘어 옥화리로~



23

충북시사토론 창 ‘청주 폭우피해 현황과 대책’



24

‘증평으로. 20일



조미정

어제 피해조사 나갔는데
안방까지 침수되어
모든 생활용품들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주고 저희는 물품만 전달하
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오전 11:19



25

운암, 옥화, 청천 현장점검 20일

어제 오후에 박연수 대표님과 옥
화대,운암,미원,청천등을 다녀왔는
데 망연자실, 할말을 잃고, 눈물이
나오네요



26

운암리를 넘어 청천으로

박연수님이 새로운 사진 11장을 추가했습니다.
7월 21일 · 3

천사들의 발상
운암리 현장에서....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최원준님, 최원장님 외 196명

공유 1회

댓글 10개 더 보기

전원표 수고하셨습니다.
머리가 부실해서 아쉽네요

좋아요 · 댓글 달기 · 7월 21일 오후 5:57

박연수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 댓글 1개

신명레님이 새로운 사진 22장을 추가했습니다. — 혼란스러워요
· 박연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7월 20일 · 3

이번 장마재해는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망연자실하여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하고
무엇부터 해야할지 난을 잃은 이재민들을 현장 에서 접하면서 사회복지사로서
한계에 부딪힘을 느낀다.
나를 열심히 노력봉사도 하며 연계활동으로 작게나마 지원해줄수 있음에도 내
가 더 출것이 없다는게 맘이 아프다.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재해로 인한 취약계층, 내일을 위해 온힘 빛을 얻어 지하.
또는 일중, 그리고 멋진 펜션등 장마로 인해 꿈은 멀어지고 복구를 떠나 희망을
갖고 다시 도전함에 두려움을 안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무엇을
해줄수 있는지..... 더 보기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27

‘한 주간의 활동 점검 및 향후 대책 논의

박연수
7월 22일 · 3

오늘은 한주간 긴급구호 활동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보다 체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이재민사랑본부 2차 긴급 운영이사회를 실시합니다
청주 및 중부지역 집중호우피해 이재민 지원활동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일시: 2017년 7월 22일(토) 13:00~15:00... 더 보기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최원준님, 김은순님, 김홍길님 외 116명

공유 2회

댓글 1개 더 보기

심종섭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 댓글 달기 · 7월 22일 오전 11:21

심종섭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 댓글 2개

최원매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내시고 건강 챙기시구요~

좋아요 · 댓글 달기 · 7월 22일 오후 2:29

Ju Ho Lee님이 박연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7월 22일 · 충청북도 청주 · 3

2차 긴급운영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주 및 집중호우 피해지역 자원봉사활동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교통비와 식비 지원
2. 다음 주에 이재민사랑본부와 아름다운가게가 재난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공동 나눔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 공동주최 참여기관: 아름다운가게, 이재민사랑본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충북NGO센터, 녹색청주협의회
- 내용: 선풍기, 침구류, 타월 등 150세트 전달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최원준님, 송재봉님, 최원장님 외 16명

송재봉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이재민사랑본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주고계십니다.

좋아요 · 댓글 달기 · 7월 23일 오전 6:25

28

희망얼굴 자원봉사자에게 음료 및 모밀국수 나눔

성광철님이 새로운 사진 6장을 추가했습니다 — 지선호님 외 5명과 함께
7월 28일 오후 4:19 · 📍

"수재복구 자원봉사자"를 위한 냉커피 배달
수재복구현장에서 더위에 맘을 졸리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냉커피 봉사를 무사히 마쳤어요..
오원교님이 급히 공수한 미숫가루 3Kg을 박정희님이 실력 발휘해서서 "시원한 미숫가루물" 음료가 추가되었네요... 더 보기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 회원님, 김태준님, 정용만님 외 174명

성광철님이 새로운 사진 7장을 추가했습니다 — 김태준님 외 5명과 함께
7월 29일 오후 4:12 · 충청북도 청주 · 📍

수재 아픔을 함께하기 위한 "냉모밀국수 나눔"
- 담장이 국수이여(김윤경), 희망얼굴 -
사람을 받아온 우리-
수재아픔을 함께하며 자원봉사자를 위한 나눔행사를 함께했어요... 더 보기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 회원님, 김태준님, 정용만님 외 132명
댓글 7개 더 보기
박성민 봉사자께 증축은 시면여 특이 합니다.
👍👎🗨️ 1 · 7월 30일 오후 11:03

31

‘2017 중부권 집중호우

박연수님이 새로운 사진 11장을 추가했습니다.
7월 30일 오후 4:36 · 📍

청천면 부성1리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한다..수마가 활취고간 자리는 농지, 가옥 등 극복하기 힘든 상흔을 남겼다. 서울시 자원봉사팀, 과산군 자원봉사팀, (사)이재민사랑본부, 충북NGO센터,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함께 한 오늘! 아내와 딸이 함께 해 더욱 의미있는 하루였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 정영숙님, 최현준님 외 329명
공유 2회
댓글 40개 더 보기
이재민 마음이 많이 아프실 농민 맘이 좀 나아하셨으면 ^^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댓글 달기 1 · 8월 2일 오후 10:42
👍👎🗨️ 박연수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 댓글 1개



32

‘2017 중부권 집중호우

청천 수해지역 농민 돕기 봉사참여 후기

인삼 재배 농가의 밭에 가서 시설물이 무너지고 망가진 것을 해체하고 복구하는 일을 어른들 뒤에서 도왔다. 갑작스런 집중 폭우로 농가 피해가 컸던 것 같다. 오전에는 봉사참여 하러 오시는 분들의 차량 교통 안내를 도와드렸고, 점심식사를 마치고 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손을 보았다. 물에 잠겼던 지역이어서 돌아다니는데 밭이 폭폭 빠지기도 하고 웃에 묻히기 일 수였다. 그리고 오후가 되니까 햇볕은 더 쬘고 덥고 힘들었다. 좀 더 열심히 도와드려야 했는데..... 아쉬운 망이다. 농민들은 이 넓은 밭을 어떻게 가꾸시는지....궁금하기도 했다. 수십명이 같이 일했는데도 힘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큰일은 농기계로 어른들이 마무리 하셨다. 어려운 복구작업도 여러명이 협동해서 하니깐 빨리 끝났다. 농가 주민들이 빨리 밝은 모습으로 다시 되찾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서로 돕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2017. 7. 30 청천 수해지역 봉사 후 소감
충북사대부속고등학교 3학년 1반 방영석
충북사대부속고등학교 1학년 1반 방준석

과산 재해 복구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 김연지

이번 충북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를 가서 마음을 담아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도와드린다는 것은 정말 보람되고 어디에 비할 바 없이 마음 따뜻해 지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 지역 공무원분들과 자원 봉사자분들과 함께 인삼 농사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목재 기둥을 나르고, 묶는 작업을 하면서 협력하여 일을 하니 좀 더 수월하게 일을 끝낼 수 있었고, 마무리 작업까지 하고 나니 그 마음은 두 배로 컸습니다. 직접 보고 도와드리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봉사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일도 협력하여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중간에 일을 한 후의 밥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더운 날, 일은 비록 힘들었지만, 모든 일의 기본이 되는 봉사 정신을 더 키울 수 있었고,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많음을 직접 보고, 앞으로 자주 기회가 된다면 자원하여 봉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3

‘2017 중부권 집중호우



박연수님이 새로운 사진 11장을 추가했습니다 — Jung Yoon Oh님

외 3명과 함께

8월 1일 오후 4:50

아름을 나눌수 있을까?

아름다운가게와 (사)이재민사랑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NGO센터가 공동으로 '희망보따리'를 재해위약계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1,500여만원의 물품이 150가구 침수피해 주민에게만 전달되는 부족함은 있지만 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드리기위해 충북의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100여명이 50여 자원봉사 팀을 꾸려 주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불행 더위에도 아픔을 이겨내는 수해 이재민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 충북교육발전소, 희망얼굴, 동행, 이재민사랑본부, 충북참여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두꺼비와 친구들, 충북민예총, 청주KYC, 충북지속가능협의회, 충북시민재단, 녹색청주협의회, 청주여성성전화, 청주CCC, 충북-청주경실련, 청주YWCA, 노동인권센터, 으랏차차차



총 150세대 : 이불세트, 선풍기, 타올, 양말



이현경

아고 너무 늦게 왔네요
지역별은 정리를 안했구요
청주시 95명
충암1동 주민센터 10명
운전신봉동주민센터 8명
희망네트웍 8명
충평교정 8명
진전군정 10명
괴산군정 10명
보훈정 3명

노동인권센터 1명이요

생각나는것만 알려드렸구요
자료는 사무실로 가야해서요

오후 6:16

34

‘희망보따리 전달식



35

음성도 자유롭진 못했다.



36

자원봉사자



37

이젠 재해 문제도 시민사회가



39

충북시사토론 창 ‘괴산댐 논란 남는 과제는?’



40

행정에도 칭찬을~~~

청주시 재난대책은 상생발전협력단에서 해왔다. 일요일도 없이 밤 늦게까지 근무하며 자원봉사자를 적당한 장소에 적절히 분배하기 위해 노력한 김미라 주무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민간에서도 청주시가 자리를 잡으며 모든 자원봉사자를 상생협력관실을 통해 분배하였다.

충북도 김봉수 주무관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쓰레기는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 수해로 인해 발생한 수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 쓰레기처리는 재해지구 선포가 되었을 때 그리고 관계중앙부처의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비로 처리 할 수 있다. 이에 김 주무관은 필요성 인정을 받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증평과 보은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지원 받았다. 총 20억원이 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지원 받음으로 지방비를 아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이 수 많은 시민과 관계 공무원들이 휴가도 미루고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매뉴얼을 재 정비하고 민관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41

감 사 합 니 다



제 1 세션 재난피해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

2 집중호우 발생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 천안시 사례

조 성 박 사
[충남연구원]



집중호우 발생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 천안시 사례

조 성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2017. 08. 29



목 차

- I 집중호우 발생의 특징 변화
- II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피해현황(충청남도 천안시)
- III 천안시 재난관리 여건
- IV 2017년 7월 천안시 집중호우 재난관리 문제점
- V 지방자치단체 자연재난 관리 정책의 시사점

I. 집중호우 발생의 특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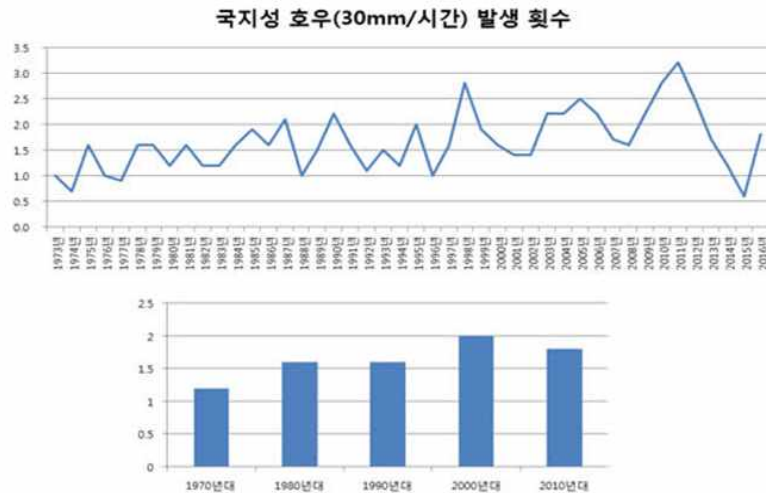
3

1. 지구온난화

- ▶ 지난 4월 하순 이후부터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 하순까지 가뭄이 이어짐
7월부터는 전국이 본격 장마에 들어가 곳곳에 많은 비가 왔지만,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는 매우 컸음
- ▶ 1980년대까지만 해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장마의 양상이 달라짐
1980년대 장마전선은 남쪽의 해양성 무더운 공기와 북쪽의 대륙성 찬 공기 사이에 1,000km에 걸쳐 폭넓게 만들어지는 비구름의 띠.
지구 전체 기온이 상승하면서 2000년대 이후 장마전선은
기온 상승 탓에 장마전선을 만들어내는 주변의 공기가 과거와 달라짐
- ▶ 지구 온난화로 수증기가 늘어남에 따라 다른 영향이 없더라도 폭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짐
수증기 공급이 계속되는 환경 속에서 비구름이 좁지만 대기 상층 10km까지 높게 스스로 발달하면서 국지성 폭우를 뿌리게 됨

4

2.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증가



- ▶ 한 시간에 30mm 이상 비가 온 날이 1970년대에는 한 해에 평균 1.2일
1980년대, 1990년대에는 각각 1.6일, 2000년대에는 2일로 1970년 대비 1.6배 증가

5

3. 불투수면적 급증

- ▶ 아스팔트나 시멘트 같은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도시 특성
- ▶ 불투수면적이 넓으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한 채 길 위를 흐르다가 하수관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비가 많이 와 하수관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면 결국 물이 넘침
- ▶ 전국 토지의 8%가 불투수면적인데 비해, 도시는 많게는 60%가 불투수면적으로 도심 침수가 반복됨

6

II.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피해현황 (충청남도 천안시)

7

1. 2005년 이후 천안시 자연재난 피해

2005~2014 천안시 자연재난 피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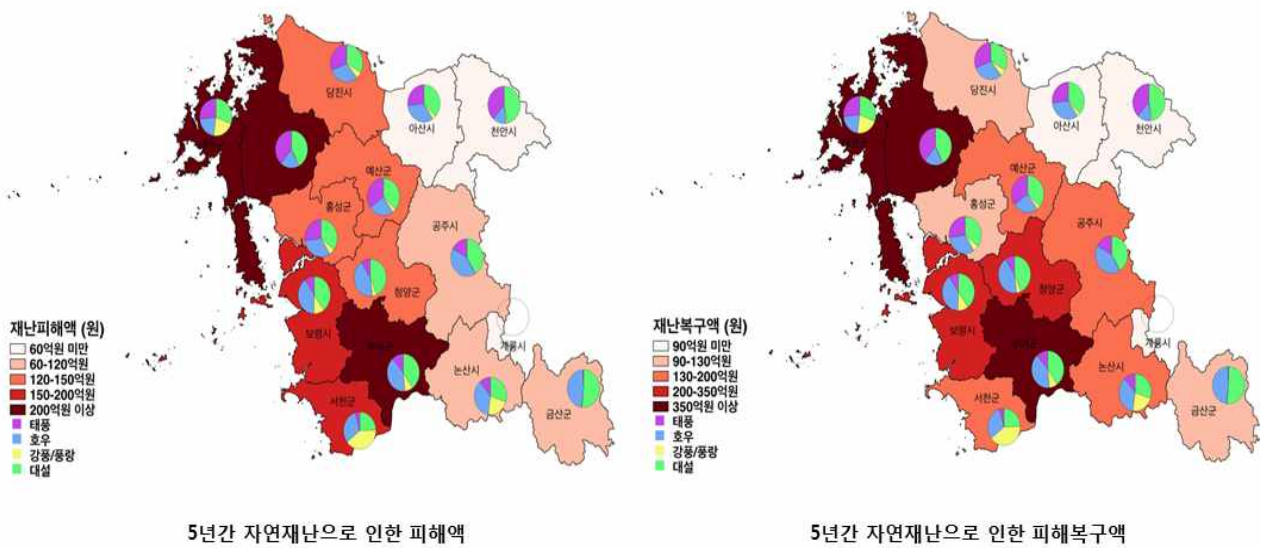
구분	사망/실종 (명)	부상 (명)	이재민 (세대/명)	피해액 (백만원)	복구액 (백만원)
충남도 합계	7/1	7	630/1,447	342,909	485,789
천안시	-	-	10/21	14,222	30,962

2010~2014 충남지역 주요 자연재난 피해 지역 및 피해내용

재난명	주요 피해지역	피해내용	
		인명	피해액(억원)
2010. 7. 23 ~ 7. 24 호우	보령, 부여, 서천, 청양	사망3, 실종1, 이재민 7세대/16인	207
2010. 9. 1 태풍 곤파스	보령, 아산,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사망1, 부상4, 이재민 432세대/1,058인	1,097
2011. 7. 7. ~ 7. 14 호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이재민 12세대/26인	209
2012. 8. 25 ~ 8. 30 태풍 볼라벤, 덴빈	보령, 서산, 논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사망2, 부상2, 이재민 77세대/171인	440
2012. 8. 12 ~ 8. 13 호우 2012. 8. 14 ~ 8. 16 호우	공주, 보령, 청양, 태안	사망1, 이재민 4세대/7인	146
2014. 12. 1 ~ 12. 6. 대설강풍	서산, 서천, 태안	-	134

8

2. 최근 5년간 자연재난 피해액과 복구액



9

Ⅲ. 천안시 자연재난 관리여건

10

1. 천안시 지역안전도 및 지역안전지수

2013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구분	위험환경	관리능력	방재성능	안전도	등급
천안시	0.551	0.709	0.925	0.626	6
공주시	0.485	0.887	0.770	0.531	4
보령시	0.535	0.785	0.450	0.725	8
아산시	0.532	0.876	0.310	0.777	9
서산시	0.452	0.838	0.340	0.714	8
논산시	0.555	0.800	0.310	0.808	10
계룡시	0.392	0.894	0.280	0.705	8
당진시	0.485	0.815	0.536	0.638	6
금산군	0.567	0.743	0.864	0.632	6
부여군	0.615	0.704	0.382	0.843	10
서천군	0.552	0.638	0.623	0.726	8
청양군	0.550	0.835	0.400	0.748	8
홍성군	0.469	0.723	0.488	0.682	7
예산군	0.459	0.771	0.240	0.795	9
태안군	0.510	0.742	0.582	0.66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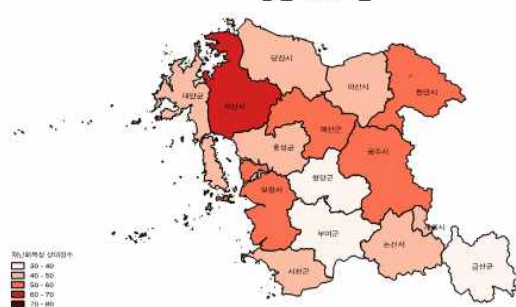
2016 지역안전지수 등급-자연재해 분야

지역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급	4	1	4	2	4	2	2	3	2	3	2	4	3	1	3

11

2. 충청남도 시군별 상대적 재난회복력

종합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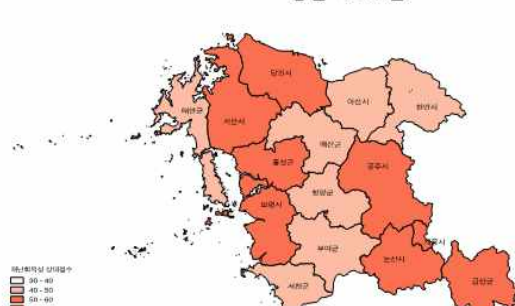
종합 -2008년



종합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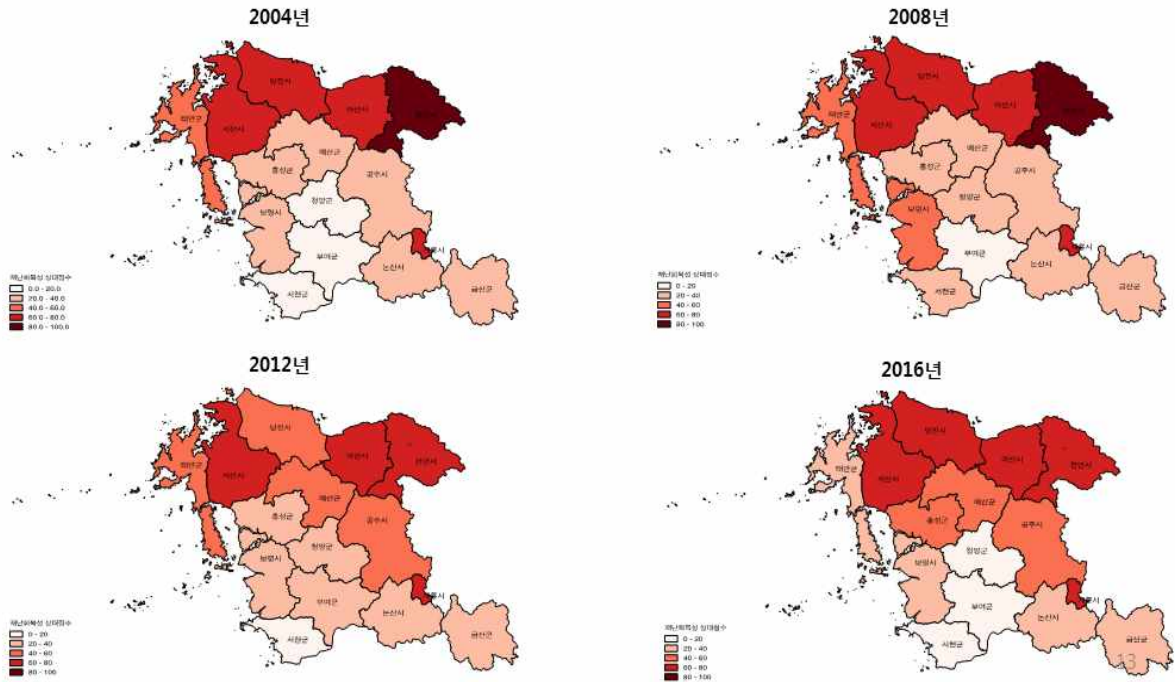


종합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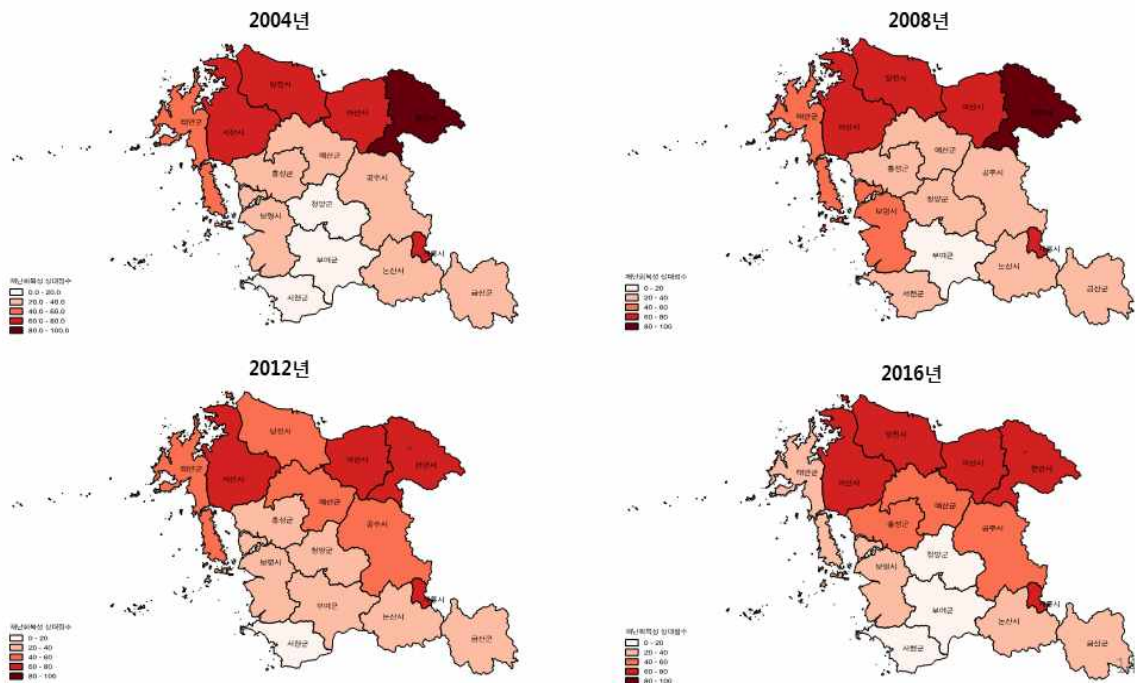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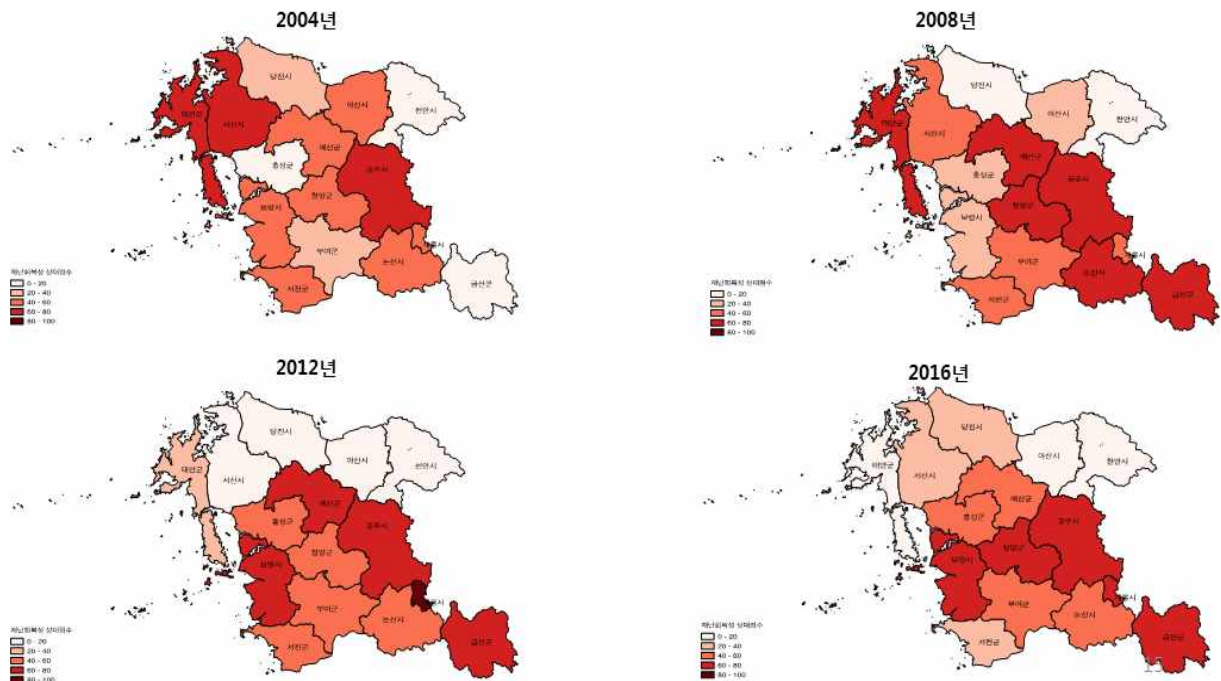
2. 충청남도 시군별 상대적 재난회복력 (1)사회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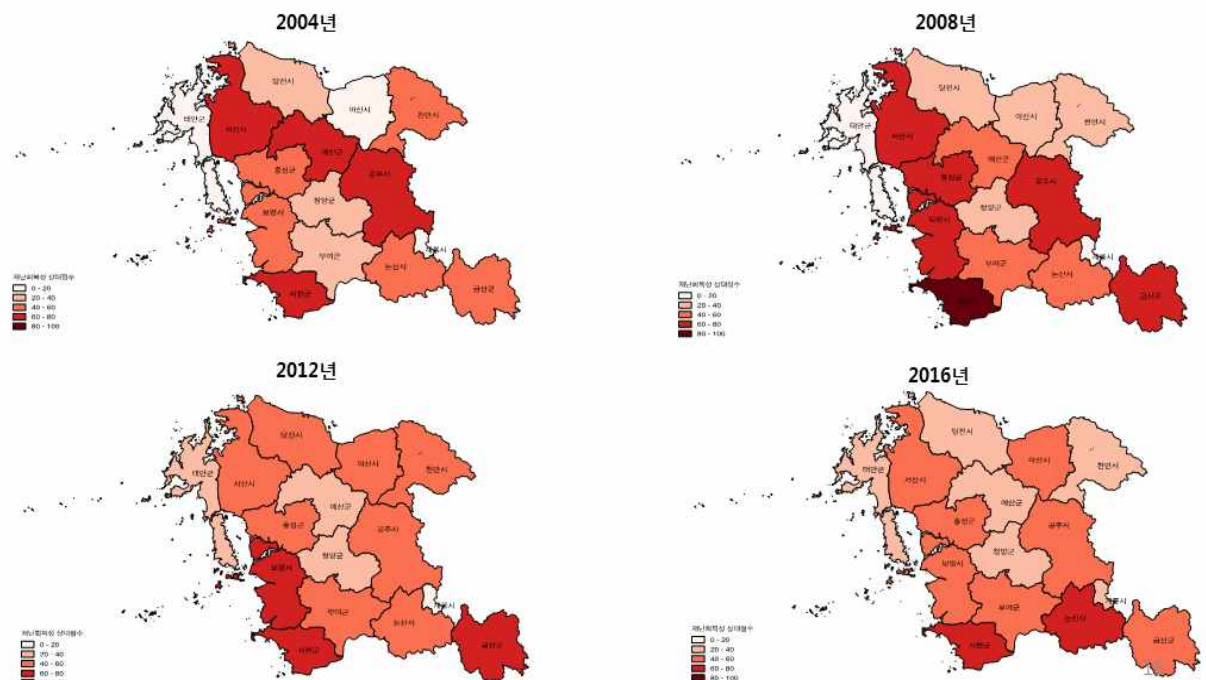
2. 충청남도 시군별 상대적 재난회복력 (2)경제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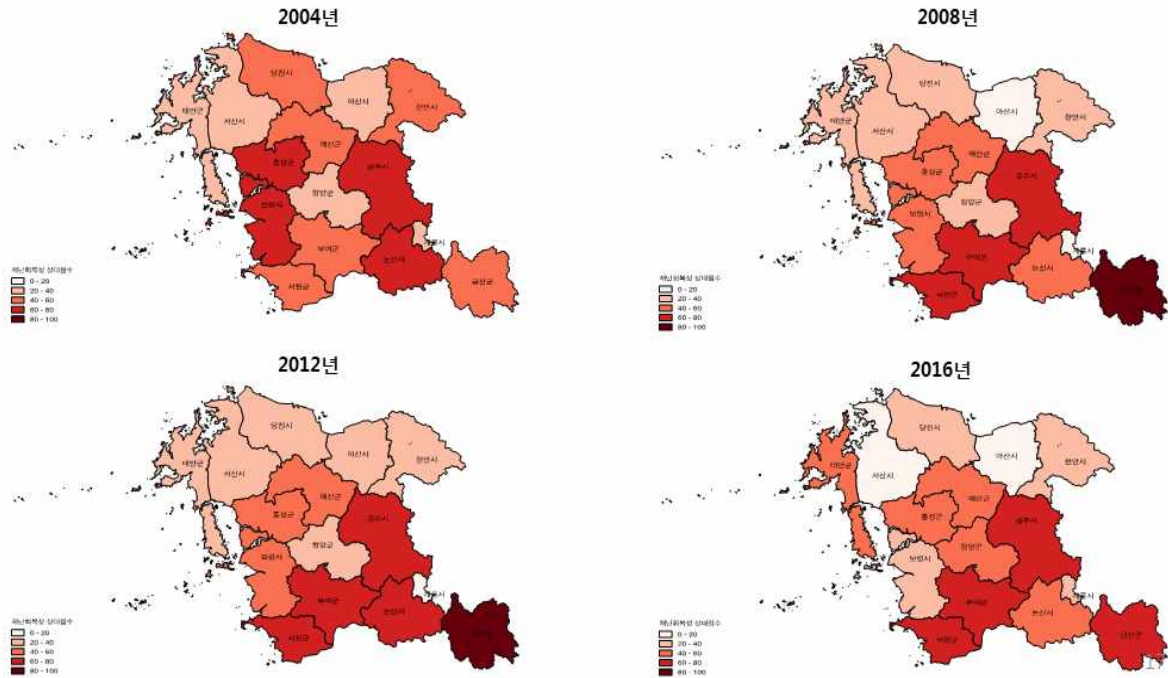
2. 충청남도 시군별 상대적 재난회복력 (3)공동체자본



2. 충청남도 시군별 상대적 재난회복력 (4)제도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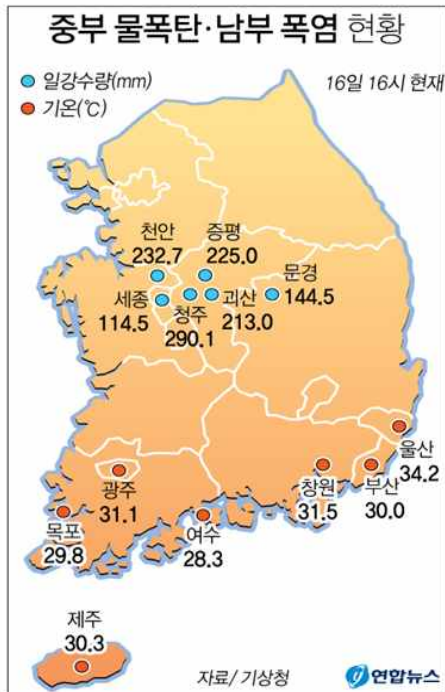


2. 충청남도 시군별 상대적 재난회복력 (5)사회기반시설



IV. 2017년 7월 천안시 집중호우 재난관리 문제점

1. 7월 16일 중부지역 집중호우



- ❑ 2012년 9월 태풍 '덴빈'과 '볼라벤' 피해로 부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5년 동안 도내에선 이렇다 할 호우피해가 없었음
최근 3년 동안은 가뭄피해가 대부분
- ❑ 충남도는 하천, 도로, 주택분야 전문 공무원 6명을 천안시로 파견했고 도·시 합동조사반이 구성
- ❑ 16일 천안지역은 평균 182.2mm, 병천면 최고 253mm, 시간당 74mm 집중호우
피해액은 533억4600만원
 - ▷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 400억600만원
 - ▷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의 피해 133억4000만원
 - ▷ 주택 313동 침수 및 파손
 - ▷ 이재민 196명 발생

19

2. 피해원인

- ❑ 하천기본계획의 계획빈도를 초과한 집중호우로 피해 증가
집중호우로 지표수 및 하천유량 급증에 따른 제방 유실 및 범람으로 주변지역 침수 피해 발생
* (계획빈도) 천안 서원천(2시간 지속 124.3mm, 80년), 승천천(2시간 지속 214.4mm, 80년)
- ❑ 지반 표층이 얇은 급경사 산지지형 중심으로 산사태 피해 발생
천안 병천·북면 및 목천읍을 중심으로 피해 집중
* 천안 병천·북면 및 목천읍 지역 14개소

20

2. 피해사례 (1)산사태



동남구 북면 은지리 인근 산사태 발생으로
길이 모두 쓸려 내려가면서 3명이 고립
헬기에 의해 구조
산사태 6건 발생



은석산 산사태

21

2. 피해사례 (2)주택



주택 파손



해비타트에서 지원하여 올해 입주한 주택,
재난 피해가 약자에 더욱 가혹한 이유

22

2. 피해사례 (3) 도심 침수



천안아산역 침수



쌍용동 이마트 앞 대로 침수

23

2. 피해사례 (4) 경작시설



병천면 일대 제방, 농경지 피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농가 피해 발생

24

3. 피해 조사

- ▶ 천안시는 재난지원금 요청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호우 피해조사에 착수

총 피해액은 533억4600만원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 400억600만원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의 피해 133억4000만원

▷ 주택 313동 침수 및 파손

▷ 이재민 196명 발생

총 피해액은 221억8300만원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 200억8380만원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의 피해 20억9942만원

▷ 주택 313동 침수 및 파손

▷ 이재민 23세대 45명 발생

- ▶ 23일까지를 집중호우 피해조사 비상 기간으로 정하고 19일부터 현장에 직원을 투입
각 부서 직원들은 2~3명씩 피해가 가장 큰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입장면에
파견돼 읍·면 이장들과 협업으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조사, 취합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취합해
26일까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입력을 마친 뒤 각 소관부서별로 내용을 확인하고
복구 또는 재난지원금이 시, 도, 중앙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
시는 국비를 추가 지원받기 위해 피해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
(7월 20일자 금강일보, 뉴시스, 충남시사신문)

25

4. 자원봉사자 관리

- ▶ 7월 16일 ~ 22일 적십자사 충남지사

- ▶ 천안시 교촌리, 원성동, 병천면, 일봉동, 신안동, 성정1동, 성남면, 북면, 동면,
수신면, 중앙동, 아산시 탕정면

- ▶ - 응급구호품 (2인) 114세트
- 김치(10Kg) 120개, 백미(10Kg) 120개, 선풍기 120개
- 급식지원 2,780명
- 세탁지원 세탁차량(부산지사) 1대
- 7/18 650Kg, 7/19 900Kg, 7/20 140Kg
- 활동인원 768명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 300명(재난피해자, 주변인, 가족, 구호요원, 봉사자)

26

5. 이재민 대피소



- ▶ 천안여중 체육관
- ▶ 급식으로 식사 해결
숙박시설 또는 친척집 등에서 숙박

27

V. 지방자치단체 자연재난 관리 정책의 시사점

28

- ▶ 피해 현장 조사, 피해자 파악
- ▶ 이재민 지원 방식의 변화 필요
- ▶ 지역 내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 - 지역의 공동체 자본 활성화
- ▶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 ▶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한 기부금 모금과 사용

29

감 사 합 니 다

30

제 2 세션

재난과 재난약자 보호

1 대형재난에 따른 재난약자
현황 및 일본사례 실증분석

이 재 은 교 수
[충북대학교]
김 가 희 연구원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대형재난에 따른 재난약자 현황 및 일본사례 실증분석

2017.08.29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이 재 은 교수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김 가 희 연구원

1

목차

1. 재난약자 현황

- 1.1 고령자
- 1.2 장애인
- 1.3 외국인
- 1.4 영유아

2. 일본의 민간 긴급구호 체계

- 2.1 고베시 재해자원봉사자 정보센터
- 2.2 재해자원봉사자 현지지원센터

3. 일본사례 실증분석

- 3.1 일본 재난약자 지원사례
- 3.2 '95 한신아와지 대지진
- 3.3 '11 동일본 대지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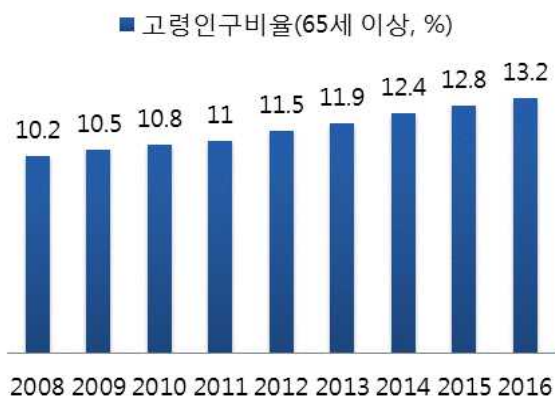
재난약자 현황

3

재난약자 현황

1.1 고령자

- 한국의 총인구는 2016년 7월 1일 기준 5,125만 명
- 그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676만 명,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13.2%
-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
- 고령자 중 독거노인비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 *자료: 통계청

4

재난약자 현황

1.2 장애인

- 등록장애인 수는 2016년 현재 251만 명
- 총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은 2005년 3.7%, 2010년 5.0%, 2015년 4.8%
- 등록장애인의 장애정도별 비율: 중증장애인 815,388명(32.7%), 경증장애인 1,675,018명(67.3%)



*자료: 보건복지부 시도 장애인등록현황

5

재난약자 현황

1.3 외국인

- 체류외국인은 2015년 12월말 현재 1,899,519명 최근 5년간 매년 8.6%의 증가율을 보임
- 국적별: 중국 955,871명(50.3%), 미국 138,660명(7.3%), 베트남 136,758명(7.2%), 타이 93,348명(4.9%), 필리핀 54,977명(2.9%), 일본 47,909명(2.5%)
- 체류목적: 취업 625,129명(32.9%), 재외동포 328,187명(17.3%), 결혼이민자 151,608명(8.0%), 영주 123,255명(6.5%)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체류외국인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장기체류	1,120,599	1,219,192	1,377,945	1,467,873
-단기체류	324,504	356,842	419,673	431,646
불법체류자	177,854	183,106	208,778	214,168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6

재난약자 현황

1.4 영유아

- 영유아: 영유아보호법 제2조에 따라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 2017년 6월 현재 2,623,125명, 총인구의 5% 차지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7

일본의 민간 긴급구호 체계

8

일본의 민간 긴급구호 체계

- 일본은 위치, 지형, 지질, 기상 등의 자연 조건으로 미뤄볼 때 지진, 태풍, 호우, 화산 분화 등에 의한 재해 발생 가능성 높음
- 세계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재해 발생률:
매그너튜드(M) 6 이상의 지진 횟수 20.5%
활화산 수 7.1%, 사망자수 0.5%, 재해피해액 16.0%
세계 0.25%의 국토 면적에 비해 상당히 높음

- 2002년 1월, '구조개혁과 경제재정의 증기 전망'
→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이,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서" 원칙 제시
- 방재 부문에서 각 주체의 역할을 재인식·검토
- 주민·기업이 스스로를 재해로부터 지키는 '자조(自助)'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조하는 '공조(共助)'
중앙·지방의 행정에 의한 시책을 통한 '공조(公助)'의 적절한 역할 분담에 의해 주민, 기업, 지역사회, NPO 및 행정부문 각각에 상응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



9

일본의 민간 긴급구호 체계

2.1 고베시 재해자원봉사자정보센터

조직

- 고베시는 '95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재난발생시 순조로운 자원봉사 활동 진행을 위해 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분담, 구체적인 지원 위한 네트워크 구성
- 재난발생시 지방정부와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민간자원봉사조직들과 재난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급구호 활동을 조정·연계하는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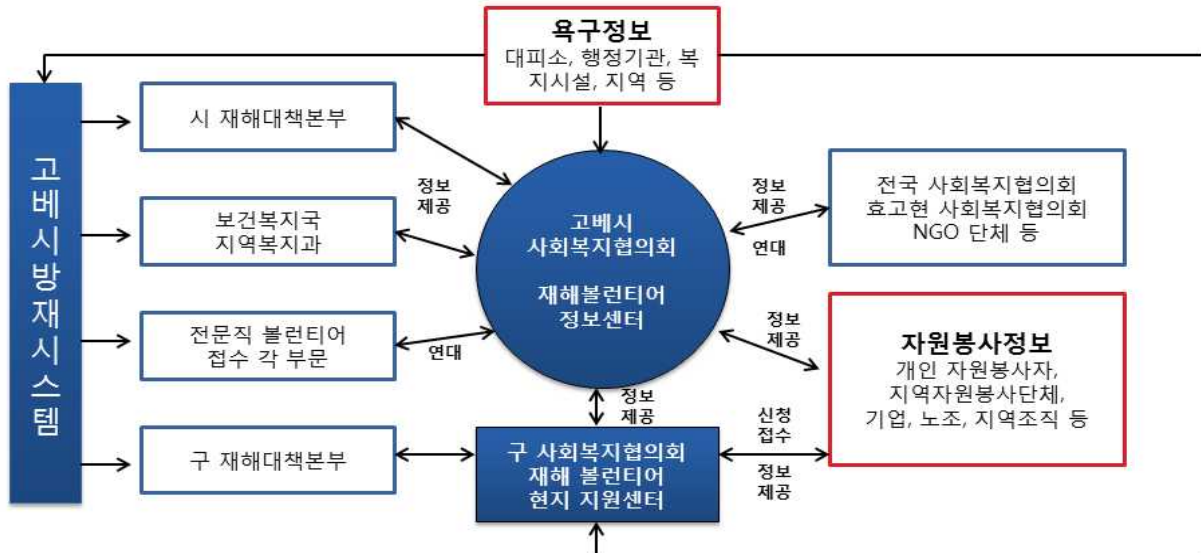
역할

1. 재해자원봉사자 현지지원센터 설립 지원
- 재난발생지역에 현지 지원센터를 빠른 시간 안에 설치, 구의 사회복지협의회와 연대하여 구호활동 지원
2. 재해대책연락회의 개최
- 피해 현황/자원봉사자 지원 등에 대한 현황 보고, 피해지역 정보 제공, 재해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책 검토
3. 정보 공유
- 행정기관, 다른 민간기관, NGO 등 단체와 연대, 정보 수집/정리/발신, 시·방재 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지역 정보,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 파악 후 유관기관들과 정보 공유
4. 재해자원봉사자 활동지원금 조달
- 재해의 규모·상황에 따라 재해자원봉사자 활동지원금 구좌 개설, 공동모금회에 설치된 대규모 재해 시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제도에 신청해 지원금 조달
5. 자원봉사 단체 조직화
- 자원봉사자를 조직화해 물자 배분 및 급식 지원 등을 위해 현지 지원센터에 파견, 정보센터로부터 다른 도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조직화된 봉사자들의 파견을 의뢰

10

일본의 민간 긴급구호 체계

2.1 고베시 재해자원봉사자정보센터



[고베시 재해자원봉사자정보센터의 정보 흐름도]
*출처: 이재은 외(2012: 196)

11

일본의 민간 긴급구호 체계

2.2 재해자원봉사자 현지지원센터

조직	▪ 각 구의 자원봉사자 센터 내에 설치 ▪ 재해발생 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시민의 필요, 자원봉사자 활동의 주체, 내용 등이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지원책도 맞춰 변화
역할	1.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발신 - 피해상황, 자원봉사자, 욕구에 대한 정보, 물자, 기자재 등에 대한 정보 수집/정리 - 계시관, 안내지, 자원봉사자 그룹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정보 제공 - 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재해자원봉사자정보센터, 각 구의 재해자원봉사자 현지지원센터에 정보 제공 2. 재해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업무 - 재해자원봉사자 접수 창구 설치, 재해자원봉사자 접수 - 피해자들의 욕구 접수, 이에 맞는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요청과 공급의 균형을 고려해 '자원봉사자 정보시스템'을 통해 재해자원봉사자정보센터에 의뢰해 충족 3. 재해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 활동 거점의 확보, 물자/기자재 제공, 재해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창구 설치, 자원봉사자 모임 개최

12

일본사례 실증분석

13

일본사례 실증분석

3.1 일본 재난약자 지원사례

- 일본의 재난약자 지원 제도 및 방재기본계획에서의 재난약자 지원

재해대책 기본법 일부개정	▪ 동일본대지진을 통해 2012년 “재해대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 제정 ▪ “지방방재회의” 위원으로 자주방재조직 및 전문가 추가 ▪ 시정촌 지자체에 요배려자 중 재해시 피난행동 요지원자 명부 작성 의무화		
요배려자 대책 등의 추진	▪ ‘13.08 “피난행동 요지원자의 피난행동 지원에 관한 지침” 공표 ▪ 요배려자 방재기반 정비사업 지원 ▪ 재해시 요원호자 긴급 통보 시스템 보급 ▪ 각 도도부현 경찰, 장애인 방재지식 보급 및 지원체제 정비 촉진	요배려자 관련시설 대책	▪ 요배려자 이용시설에 대한 토사재해, 수해 등의 재해대책방안이 토사재해방지법·수방법 개정 등을 통해 실시됨 ▪ 요배려자 지역커뮤니티를 통해 정보파악·확보 필요

14

일본사례 실증분석

3.1 일본 재난약자 지원사례

- 지역방재계획에 있어서의 시정촌 및 현의 역할

	시정촌	현
요배려자 지원 관련 역할	• 피난 행동 요지원자 안부확인 및 피난유도 • 피난 행동 요지원자 피난 지원 • 피난소, 자택 등의 복지 니즈 파악 및 인원 확보 • 복지 피난소 설치 • 복지 서비스의 지속 지원 • 현에 대한 광역적 지원 요청 • 외국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집	• 정보 수집 및 지원 체제의 정비 • 광역적인 조정 및 시정촌 지원 • 복수언어 정보 발신

*시정촌은 우리나라의 시군구, 현은 도에 해당

15

일본사례 실증분석

3.1 일본 재난약자 지원사례

- 유니버설 디자인 및 배리어 프리

[시즈오카현 공영아파트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사례]
(휠체어 대응 화장실)



■ 유니버설 디자인:

- 문화/언어/국적의 차이, 남녀노소의 차이, 장애/능력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시설/제품/환경/정보/서비스 등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 제품 이용 뿐 아니라 도로 및 공공 건축물 등의 사회자본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 도입
- 급격한 고령 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재난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책 추진

16

일본사례 실증분석

3.1 일본 재난약자 지원사례 - 유니버설 디자인 및 배리어 프리

[일본의 저상버스]



▪ 교통 배리어 프리법:

고령자, 장애인 등의 재난취약계층이 공공교통기관을 이용시 이동의 편리성/안전성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률

- 공공사업자로 하여금 배리어프리 기준 의무화
- 예)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의 설치, 유도 경고 블록 설치, 사용하기 편한 발권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보도의 단차 해소, 시각장애인용 신호기 설치 등

17

일본사례 실증분석

3.1 일본 재난약자 지원사례 - 전국사회복지협의회, 민생위원, 아동위원

전국 사회복지 협의회

- 사회복지법에 따라 시정촌, 도도부현, 지정도시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전국 중앙 조직
- 각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 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복지관계자와 연락조정, 활동지원, 제도 개선 실시
- '13.03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복지시설, 민생위원/아동위원 등의 단체간 대규모 재난시 전국 규모의 연계 및 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및 공통인식을 담은 "대규모 재해대책 기본방침" 책정

민생위원 아동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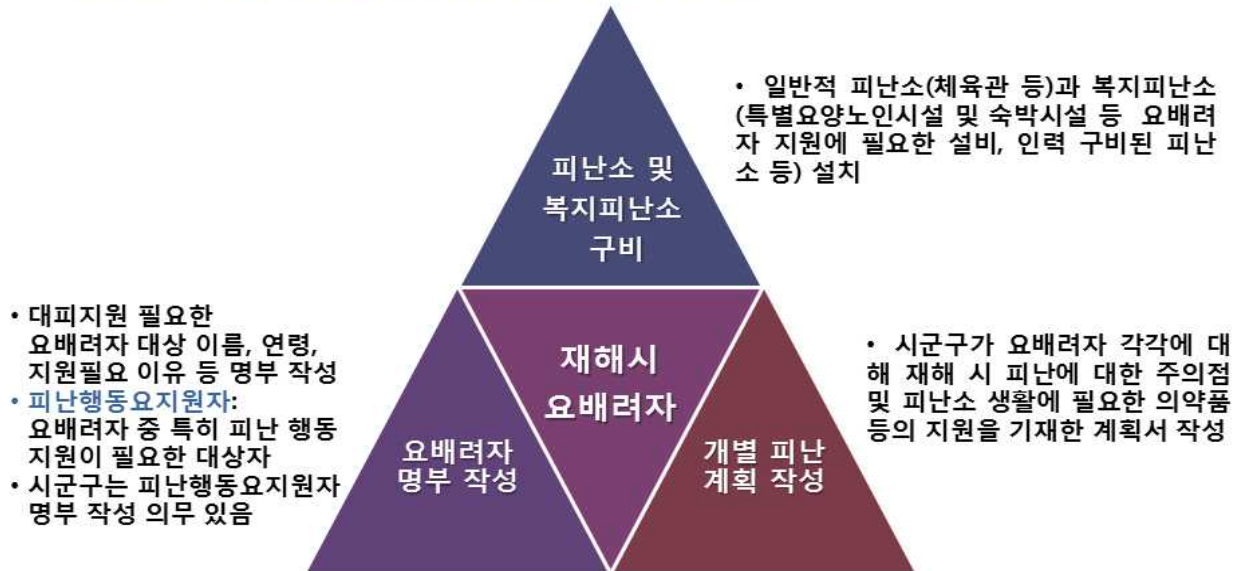
- 무보수 명예직으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도도부현지사(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장)가 시정촌장(시장, 군수 등)의 의견에 따라 정함
- 사회봉사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자원봉사자
- 활동내용: 사회조사, 상담, 정보제공, 연락통보, 조정, 생활지원 등
-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약자에 대한 대피활동 및 생활지원을 최전선에서 실시하고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를 이어주는 인적자원

18

일본사례 실증분석

3.1 일본 재난약자 지원사례

- 일본의 시정촌 레벨의 요배려자에 대한 지원 제도



19

일본사례 실증분석

3.2 '95 한신아와지 대지진



- '95 한신아와지 대지진:
- 발생: '95.01.17 효고현 아와지 섬 북쪽이 진원(Mj 7.3, Mw 6.9), 고베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 피해: 6,453여명의 사망자, 약 10조 엔의 경제적 피해 발생
- 특징: 도로, 철도, 전기, 수도, 가스, 전화 등 전반적인 라이프 라인이 광범위하게 단절, 정전, 단수가 이루어짐
 - 도시형 재해, 지진 대책에서의 라이프라인 조기 복구, 건축 공법, 가설 주택, 이재민 인정, 재해약자 지원 등 지금의 일본 방재 계획 및 대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의 계기
- 희생자 반 이상이 고령자로 재해시 약자보호의 중요성 지적
- 피난 이후의 피난소 생활 및 주거, 생계의 재건에 있어서도 재해약자만의 특별한 니즈가 필요하다는 것이 새롭게 인식됨

20

일본사례 실증분석

3.2 '95 한신아와지 대지진

효고현

- 피해 시군에 대해 “요원호자 생활상황 파악 작전” 실시로 2,875건의 요대응자 파악

고령자

- 긴급 입원 및 단기 입원에 대한 정원 초과 및 사무수속 간략화로 노양복지시설 등에 요양

외국인

- 불법노동자 특례 조치, 외국어 정보지 발행, 외국어 생활 상담, 외국인 지원 자원봉사자 배치

장애인

- 시각장애인: 수화통역방송, 문자방송, 수화통역 배치, 팩스에 의한 정보 제공
- 정신·지적장애인: 정신과 구호소 설치, 야간 대응창구 설치 및 야간 왕진팀 배치
- 효고현 복지센터에 “장애자 지원센터” 개설, 장애인의 니즈 파악

21

일본사례 실증분석

3.3 '11 동일본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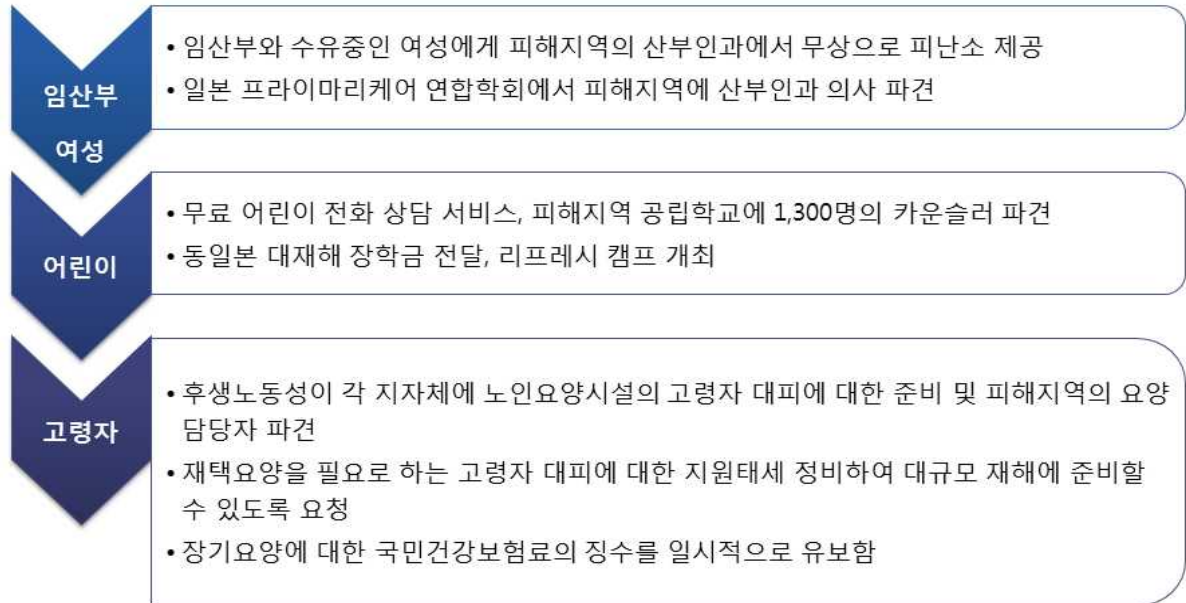


- '11 동일본 대지진:
- 발생: '11.3.11 일본 동북 지방에서 일본 관측사상 최대규모(Mw9.0) 지진과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
- 피해: 실종자 2만여 명, 피난주민 55만 명, 약 160-250조 엔의 경제적 피해 발생
- 특징: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전원 공급이 중단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지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 복합재난으로 발달
- 사망자의 63.8%가 60대 이상의 장·노년층
- 지진이 발생한 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 등 3현의 장애인 사망 비중이 전체 비장애인 주민 사망자보다 약 2배 높음

22

일본사례 실증분석

3.3 '11 동일본 대지진



23

참고문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시도 장애인 등록현황.
- 이재은, 라정일, 김가희. 2017. 대규모 재난시 재난약자 지원방안: 대형재난에 따른 재난약자 현황 및 일본 사례 실증분석. 제4회 재난관리 국제포럼 발표논문집. 2017.07.31-08.01. 인천대학교 교수회관.
- 이재은, 양기근, 이주호, 성기환, 이은애, 심성화, 한동우, 류상일, 변성수. 2012. 재해구호복지론. 대영문화사.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4

감사합니다

제 2 세션

재난과 재난약자 보호

2 장애인 생활안전에 관한 연구

두 오 균 박 사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생활안전에 관한 연구¹⁾

두 오 군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사회적으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요인 증가로 사건 사고가 매일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매일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해 부터 잇따르고 있는 각종 산업 재해와 산업안전사고가 사고지역 주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국민들까지 불안케 하고 있다. 농촌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과, 의학의 발달로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생활안전 수요증대가 있고, 다양한 원인과 이유로 사고요인 증가 및 사고의 대형화 추세로 이어지고 있고, 도시의 고밀도, 초고층화, 지하 공간 증가, 전기,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 밀집으로 사고 발생 시 복합재해로 이어지고 있고 발전 피해규모도 대형화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신종사고 발생으로 발전되고 있고, 기술 발달에 따른 예기치 못한 위험요소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불안 심리가 증가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각종 통계들이 나란히(?)줄서서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한 통계가 우리들의 가슴을 멍하게 한다. (연합뉴스, 뉴시스 등 2017-07-12) 올 상반기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에서 60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사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57.1%)은 주택화재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고, 올 상반기에는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562건)에 비해 47건(8.4%)이 늘어난 609건의 화재가 발생했어, 인명피해는 사망 3명, 부상 18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32명보다 11명(34.4%)이 감소했다. 재산피해는 17억5400만 원으로 6억57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주택화재는 152건(24.8%)이 발생해 지난해 동기대비 7.3%(12건)가 감소했으나, 사망자 3명을 포함해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전체 사상자의 57.1%를 차지했다는데 작금의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생활안전의 이슈를 제기하고자 한다. 대전소방본부에서도 분석하였듯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고령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화재발견이 늦어 연기 및 화염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로 분석됐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앞에 화재가 발생하면 생활안전의 매뉴얼의 부제로 안전 탈출구의 확보와 안전 피난통로의 미 확보등 또는 훈련의 부제로 인하여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고 재난약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은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사건사고의 예를 살펴보면, 전기장판의 과열 화재로 시각 지체 중복장애인이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생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2016년 2.22), 성탄절 이브 날에는 어느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술 한잔하던 중증장애인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2014년 12월 25일), 대구의 어느 아파트에서 가스폭발로 화재로(2013년 12월 29일) 50대 장애인 사망사건이 있

1) 이논문은 두오군(2017, '한국의 장애인 생활안전에 관한 연구')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논문이다.

었다.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위험이 도처에 흩어져서 인간의 생명, 건강 재산을 위협하는 상황임에도 이들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나 기관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민 생활안전 위기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체제나 법, 제도 또는 복잡하게 얽혀 체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식품, 의약품, 시설, 교통, 학교, 직업, 취약계층 영역 등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국민생활 안전 관리는 성격상 사후 대응중심의 관리체계이기 때문이다. 국민생활 안전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행정, 법, 그리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둘째, 국민생활안전 관리 분야의 행정체계 및 법 체계가 분산되어 있다.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법령으로 이루어진 분산형 안전관리이므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중복규제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국민생활안전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분류기준이나 유형, 종류, 영역 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국민생활안전 위기에 대한 정부대책이 국민, 학계, 시민사회, 정부기관 스스로도 막연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영역으로 인식하게 된다(이재은, 2012).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은 국민들의 평안과 바람직한 생활환경의 성취를 통한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정책과 사회활동이 모든 사회 구성원을 만족 시킬 수 없으며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소외계층을 취약 계층이라고 한다. 사실상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활동에서 경제에서 벗어난 계층이 집단으로 몰려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소외된 계층이 곧 취약계층으로 귀결된다고 하였다.

취약계층에 대한 규정은 여러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16) 제 3조 9의 3에는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고, 재난 소비자 보호법이나 노인 복지법, 아동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등에 의하면 취약계층을 노인, 아동, 장애인으로 되어 있다. 소비자 기본법에는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동법 제7장 소비자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업자는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 물품 등을 판매, 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에서 명시한 사업자의 책무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안전 취약계층으로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통 감면 대상으로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 독립유공자, 공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법률인 노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경제적 취약자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 또는 가족 등이며, 신체적취약자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제시한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우 및 지원 법률에 의거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유현정, 2008).

장애인은 국민안전 위기 영역 분류하면 국민생활 안전 위기의 발생 및 피해 영향 범위에 따라 협소범위와 중광범위로 나뉘고, 국민생활안전 책임 주체에 따라 개인과 사회를 나뉘어서 장애인은 취약계층의 안전 위기로 협소범위와 개인에 속하는 유형 I 에 속한다. 취약계층 안전 위기는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으로 불완전하거나 경제적으로 부족하며 안전사고 노출빈도가 높고 안전사고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다(이재은, 2012).

이제 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를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의 조화를 통해 복지, 행복, 안녕을 추구하고 생활안전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일이라고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은 장애인의 수가 많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안전에 관한 일반적 실태조사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장애인들의 안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생활안전의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보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데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별로 인구통계특성, 개인특성 및 안전문화인 안전교육, 안전정보, 안전의식이 생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라 생활안전을 구축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고, 장애인 상황에 맞는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 장애인 유형별로 연구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여 가능하면 많은 변인들을 투입하여 장애인별로 차이점을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인구통계 특성은 나이, 학력, 수입, 주택상황을 투입하였다. 나이는 나이에 따른 발달과업이나 성숙의 정도 및 수용능력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으로 투입했으며, 학력은 사람에게 교육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여겼으며, 수입과 주택은 경제와 주택환경에 따라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도에서 투입하게 될 것이다.

개인별 특성에서 차별의 경험은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생활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도에서 투입했으며, 장애인의 발생 시기와 급수에 따른 생활안전과의 관계는 장애인은 특성을 분류하는데 유익한 변인으로 판단하여 투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문화인 안전의식, 안전정보 및 안전교육이 생활안전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따른 장애인에게 맞는 대안을 찾아 정책적 반영의 기회가 되기는 바라는 의도에서 이 연구를 추진하는 목적인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연구의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실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위기에 노출되어 생활안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에 관한 것을 위기관리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일조를 담당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이론적 범위

위기관리 관점에서 생활안전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장애인은 취약계층의 분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생활수급자 및 농어촌 주민으로 나누어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장애인의 인구통계특성, 장애인의 개인특성 및 안전문화가 생활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 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의 범위

인구통계 특성은 연령, 학력, 수입 및 주택유형으로 정하고, 개인 특성은 차별경험, 장애발생 시기 및 장애 등급으로 정했으며, 안전 문화는 안전교육, 안전정보, 안전의식으로 정했다. 이러한 3개의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고, 종속변인인 생활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알아보는 것이다. 종속변인인 생활안전의 하위 변인으로 가정안전, 전기안전, 교통안전, 소방안전, 재난안전 등으로 정했다. 이에 결과로 나타난 것을 법적, 정책적 지원을 통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3) 지역 범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3대도시를 한정하고, 시간적으로 2017년 3월부터 5월 동안에 재가 장애인 남, 여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생활현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4년도 장애인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4) 연구 대상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상의 15가지 장애유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연구의 대상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로 한정하였다. 나머지 12가지 장애는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연구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으로는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장애인으로 범위를 정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 1 장은 문제 배경과 목적 및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 2 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취약계층, 장애인, 안전문화, 생활안전 및 선행연구 검토로 구성되었다. 제 3 장은 연구 모형과 가설 및 연구방법으로 설정하고, 제 4 장에서는 연구결과로 가설검증 및 해석을 다루었으며, 마지막 제 5 장의 요약 및 결론과 제언을 다루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헌 조사, 선행연구 및 설문조사(survey)를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실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위해서 SPSS 22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안전관련 실태조사를 위해서 장애인별로 기술 분석과 함께 T 검증과 F를 실시하여 장애인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독립변인인 인구통계 특성, 장애인의 개인특성 및 안전문화가 생활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체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취약계층

1. 취약성의 개념

취약성에 대한 개념 모형은 개인차원과 다양한 수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차원의 개념모형에는 개인결정요인 모형과 개인 사회자원 모형, 개인 보건형태 모형,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이 있다(유현정, 2008).

개인결정모형은 취약계층을 이미 숙명적으로 타고난 집단으로 명명하고 나이, 종족, 성, 교육 및 생활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경우는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한 고통 또는 가족끼리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으로 매우 약할 수 있으며, 남성은 직장으로 인한 높은 짧은 스트레스로 평균 수명이 짧고 사망률이 높아서 취약계층에 속할 수 있다.

개인 사회자원 모형은 나이, 민족, 성별 등 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경제적, 비경제적 상태에 따라 취약성을 가진다는 의미로 특정한 사회나 개인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사회적 위치, 사회적 자본 및 인적자원이 취약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회자원 모형의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정보취약계층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보건형태 모형은 건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 경제적 위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개인이 경제수준이 낮으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없으며, 보건의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모델이다.

2. 취약계층의 정의 및 특성

취약 계층의 정의 및 특성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개념에서 인식될 수 있다(김세훈 외, 2005: 6). 사회적 배제란 단순히 물질적 결핍이라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빈곤과 같은 사회적 현상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금전적인 문제에서 다차원적인 불리함으로 확대하고, 개인에 치중하기 보다는 가족 및 지역사회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참여, 권한, 사회통합 등과 같은 관계적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Room, 1995: 233-242). 김세훈 외(2005)는 이러한 사회적 배제 현상이 고용,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 예로 기술 발전으로 인한 미숙련 노동자들이 겪는 사회적 배제, 대량 실업 사태에 빠진 노동자, 사양 산업으로 인한 특정 산업 종사자의 실업상태 등을 들고 있다(김세훈 외, 2005: 6-7). 고용 및 복지정책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저 기술여성 인력의 취약 계층으로의 분류는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급격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김세훈 외, 2005: 7).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들 수 있다. 김윤희 외(2012)는 사회적 약자를 ‘기본적인 사항들, 즉 헌법 제 10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헌법 제 34조에 명시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지칭하고 있다.

3.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 따른 의미

1) 법·제도적 접근

헌법에는 장애차별 금지의 근거 규정 중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4조). 이에 따라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는 생활안전과 재난으로 부터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어있고, 정부는 장애인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국민으로서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법률들을 살펴보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을 생활안전과 재난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근거조항은 부재하였고, 타 법에서도 장애인 생활안전이 아닌 안전대책수준의 단순 규정, 규칙만이 있을 뿐이다.

2) 사회적 접근

이석호(2007)는 ‘보험사의 공익성과 보험취약계층’에 대한 논의에서 보험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 및 공익성을 제고하고 자발적으로 노력 및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취약계층으로 재래시장상인, 고위험 직종종사자,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들고 있음 그중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많은 신문기사들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을 살펴보면 주제에 따라 다소 접근에 차이는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접근의 차이는 대상을 규정하는데 적절한 차이를 주고 있으나 대상을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일정 집단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3) 학문적 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인숙(2004)은 취약계층을 경제적 취약계층과 연령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였으며 김정은과 이재인(2006)은 취약계층을 장애인 가족 빈곤가족, 한 부모 가족으로 분류했다. 또한 이경웅 외 7인(2007)의 ‘산재취약계층 실태분석’에서는 산재취약계층으로 비정규직 종사자를 들고 있으며 특히, 용역근로, 파견근로, 호출근로 등이 그중에서도 더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4. 취약계층으로서의 장애인

취약계층으로서의 장애인은 생활안전이라는 광범위한 조건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립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로 활동이나 이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 판정 기준에 근거하면, 기능상실, 절단등 원인과 유형에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스스로 만들기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다. 생활안전에 취약계층은 일상생활에서 안전에 대한 담보가 사회 환경적 특성과 개인의 역량이 한계가 있어 생활안전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

는다. 따라서 생활안전에 대하여 특별한 욕구가 있는 대상이다.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 2 절 장애인 생활 현황

1. 장애의 분류와 원인

1) 장애의 분류

장애의 범위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간질)장애 총 15종류의 장애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 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는 것이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 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5개의 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장애등급을 1등급부터 6 등급까지 6가지로 분류와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유형 분류는 1997년에 공포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이후의 단계적인 장애범주 확대에 의한 것으로 1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1999년에 이루어져 장애범주가 5개에서 10개의 유형으로 확대되었고, 2단계 장애범주 확대는 2003년에 이루어져 10개의 유형이 15개의 유형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제 3 절 안전문화

본 연구에서 안전문화는 안전교육, 안전정보 및 안전의식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1. 안전교육 및 안전정보

1) 안전의 개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누구나 음식, 물, 공기, 땅, 그리고 사용하는 에너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처에 있다.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Douglas and Wildavsky, 1982 : 김영치, 1998 옮김). 위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안전은 범위에 따라 다르고,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안전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상반된 개념인 위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본 독일 경제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 1997)은 그의 저서 「위험 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에서 위험을 근대화로 가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정의하

며, 위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는 위험이 갖는 특징으로 위험의 보편성, 예측의 난해성, 회피해야할 대상, 무한성, 위험의 광범위성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특성을 통해 현대사회를 객관적으로 지구전체를 위험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위험이 사회적 부메랑 효과를 보이면서 확산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안전이란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환경으로부터 건강한 신체에 대해 완벽한 보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안전은 인간존중의 사상으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항상 같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안전은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우리 주위의 환경을 재정비한다는 점에서 공동의 운명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전’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인 것이다(박성은, 2001).

2) 안전 이론 및 체계

일반적으로 안전이란 사고 또는 상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전적(새 국어대사전, 1995)으로는 편안하고 위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안전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한광석(1987)은 몸이 건강하고 생명의 위해가 없는 신체적 안전만을 ‘안전’이라고 보았고, 주낙서(1987)는 신체적으로 편안하고 생명에 위협요소가 없으며 정신적 손실이 최소화한 상태라고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안전’이라고 하였다.

(1) 안전 이론

오늘날 안전에 관한 제 이론들을 Heinrich 산업안전의 원리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Heinrich와 같이 도미노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로는 Frank Birds, Edward Ada, s, D, A Weaver. Mixhael Zabetakis 등이 있으며 이중 Heinrich와 Frank Birds의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인리히(Heinrich)이론은 사고발생의 연쇄성을 강조한 도미노 이론으로서 재해의 발생은 언제나 사고요인의 연쇄반응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며, 대부분의 사고 책임은 불안정한 인간의 행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도미노 이론이라고 불리는 재해의 인과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미노 게임에서 하나의 골패를 쓰러뜨리면 연속적으로 골패가 무너지는 현상을 비교하면서 재해과정이 연쇄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즉 사회적 환경→개인적 결함→불안전 행동 및 불안정한 상태→사고→상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예방의 중심문제로서의 제3의 요인인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의 중추적 요인의 배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도미노 이론은 5가지 요소들 중에 한 가지라도 사고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 사고방지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연쇄이론의 핵심과제는 불안정한 상태를 통제하는 것이며 이 통제를 위해 과학적인 방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편, Heinrich는 사고와 재해의 관련을 명백하기 위해 『1: 29: 300 법칙』으로 재해 구성 비율을 설명하면서 1회의 중상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사람은 같은 원인으로 29회의 경상재해를 일으키고, 또 같은 성질의 무상해 사고를 300회 동반한다고 하는 것이다. 전 사고 330건 중에서 중상이 나올 확률은 1, 경상은 29, 무재해사고는 300건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전에 반드시 작은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큰 재해는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문

제가 발생한다.

2. 안전사고

1) 안전사고의 개념

안전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 탈이 없거나 위험하지 않거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영어사전은 ‘free from harm, injury or risk no longer threatened by danger or injury’로 기술되어 있어 그 의미가 국어사전에 나온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소방 방재청, 2007).

김혜원(2001)은 ‘안전이란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적 피해 혹은 사고부터 오는 재산적 피해를 없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안전의 정의에 대해 국제보건기구(WHO, 1981)는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위험과 육체적,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해로움을 초래하는 조건들이 조정되는 상태라 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안전이란 위험으로부터 오는 사망, 상해 및 질환 또는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손해를 방지 또는 극소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상태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권봉안 등, 1987).

따라서 안전이란 인간의 신체에 재해를 받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개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함께 살아가야하는 점에서 운명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박성은, 2001).

이 연구에서 안전사고의 의미는 박용익 등(2008)이 사용한 의미로 정의되며, 즉 안전사고(safety accident)란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정한 행동 또는 조건이 선행되어 일을 저해시키거나 능력을 저하시키며 직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event)을 뜻한다.

2) 안전의 접근방법

인간은 누구나 편안한 삶의 영우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으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 또한 강하다(Maslow, 1970). 안전이란 위험의 반대개념으로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안전 활동 추진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인간애와 인간 존중이 바탕이다(박필수, 2004). 그러나 인류의 문명과 기술의 발전은 우리생활의 편리함과 함께 각종 재해 즉, 교통사고, 산업장 안전사고, 가정안전사고 그리고 여가활동 중의 사고 등과 같은 안전사고율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재산의 손실과 인명손상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Bjaras, 1993). 사고로 인한 사망(연도별)의 연령대 비율(한국)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자살, 타살 제외)는 2001년 이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65세 이상의 노인 계층에서는 오히려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용익 등, 2008).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요인을 바꾸거나 혹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을 교육을 통해 변화시킨다면 안전에 대한 개념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 위험을 예측하고 올바른 대처 능력을 갖추 수 있는 태도, 능력 및 실천력을 몸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 사고예방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위험인식을 높이고, 사고원인에 대한 올바른 지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이재연과 이명자, 2002).

3. 안전 교육의 의미 및 목표

안전교육이란 교육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안전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몸에 익숙하게 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습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즉, 개인과 집단의 안전성과 건강을 최고도로 발달시키는 교육이다(김혜원, 2002). 또한 안전교육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에서 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나 논의를 통한 설득적인 대화, 강화자극을 통한 강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 의식을 생활함은 물론 안전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내면화시키고 습관화시키기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김연순, 1983).

결국 안전교육이란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적도록 행동 및 환경을 만든 것을 교육하는 것과 아무리 본인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로부터 자기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도록 행동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잠재하는 위험요인 또는 불안정한 요소를 미리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확실한 안전교육은 잘못된 정보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을 가져오는 성과를 이루는데 중요하다.

안전교육의 목표는 개인이 조심성을 익혀서 위험에 대처 가능한 선견지명을 갖고, 안전하게 인간의 욕구를 추구하도록 자신의 태도를 습관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 네 가지와 같다(김혜금 외 4명, 2009).

첫째, 인명의 존엄성을 인식시킨다. 둘째, 안전에 관련한 지식과 기능을 함양시킨다.

셋째,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태도를 생활화하도록 육성한다. 넷째, 안전 행동의 통찰력을 배양시킨다.

제 2 절 안전의식

1. 안전의식의 개념

의식은 깨어 있을 때의 심리적 작용이나 상태를 의미한다. 지각하고 그리워하는 기능과 자신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자신의 행동의 근거가 된다. 우리사회에서 ‘안전 불감증’이라는 표현은 안전에 대해 생각하거나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안전의식이란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켜내고, 뜻하지 않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는 안전의 인지도를 의미하고(김혜원, 2002), 이러한 안전의식은 모든 사고와 위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거나 예방에 필요한 태도와 기능을 습득하게 한다(최인범, 1998).

안전의식을 정의하면, 안전의식이란 근로자가 잠재적으로 작업시스템에서 생기는 인간의 실수나 잘못된 직접적인 원인은 지식부족이나 지각의 잘못, 주의의 방심 등의 소질적 특성 레벨에서 발생하지만 그것은 또 안전에 대한 의식 상태에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작업상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의 지식을 가지고(인지적 성분),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모든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복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가치적 정서적 성분), 안전측면의 행동을 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안전의식은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

전에 대한 인식의 흐름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를 숙지하고 이러한 위험의 가능성을 없애거나 예방에 필요한 태도와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다.

제 4 절 생활 안전

1. 생활안전의 개념

우리는 안전의 개념을 설명하기 이전에 위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현대사회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안전의 개념도 위험의 개념에서부터 접근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이며, 과거에 비해 위험의 강도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 속의 독소, 핵의 위험, 방사능, 대기 및 수질 오염 등 비가시적이고 사람들이 감지하기 어려운 위험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현대화가 만들어낸 위험요소 일 것이다(Beck, 1992 : Giddens, 1991 : Luhmann, 1993).

또한 생활안전이란 “가정, 학교, 사회생활 등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환경에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신장시키는 것”(두경자·운용희, 2006: 76 신현정·신동주, 2007: 277; 배대식, 2009: 21)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 생활안전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손상이나 사고 위험을 줄여나가는 것”(신현정·신동주, 2007: 277; 배대식, 2009: 21; 박혜연, 2009: 13)으로 정의하고 있다. 삶의 발전은 이러한 안전에 대한 욕구를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향상과 욕구 향상은 결국 안전에 대한 욕망을 더 높이고 있으며, 이제 안전은 당연한 일상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일상생활 주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각 종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부터 발생하는 경미한 손상 및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만드는 것이 생활안전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 생활 안전의 분야

WHO의 사고분류에 의하면 사고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가정사고, 교통사고, 공공사고, 직장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인 각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고, 발생한 사고는 적절한 응급처지가 행해져야 한다.

안전사고는 연령, 성별, 지역에 구분 없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가장 생산력이 높고 국가의 미래를 담당할 젊은 연령인 중·고등학생의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으며,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구를 동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명선, 2001). 사고로 인한 사망률인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결과에 의하면, 중학교(1.127건), 고등학교(857건), 초등학교(732건) 순으로 중학교 학생이 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연령으로 나타났다(서울학교안전공제회, 1999)

가장 많이 사고를 당하는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분야는 학교안전, 가정안전, 교통안전, 화재안전, 수상안전등이다(한국산업안전공단, 1999; 교육인적자원부, 1997).

제 5 절 선행연구의 검토

1. 취약계층의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안전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재난 취약자 관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통상 취약계층이란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위험이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해서 개인이나 사회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특성으로 의미한다. 취약계층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지만 종합적으로 신체적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정보적 취약계층으로 나눌 때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 등이 대상이 된다.

이전의 선행연구에서 최경식(2013)은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던 자연재해나 인적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영역이 확대해 가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도 직결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에 비해 전체적인 시스템은 미비하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재난 취약자들에게는 더욱 더 시스템에 대한 부재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는 재난에 대한 구분에 따라 재난 취약자를 관리하고 재난 취약자 특성에 따라 재난 취약자의 대피체계 보안 정보전달망 구축, 장비보급, 전달체계 확보 등에 대한 논의가 도출되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정비를 하는 것이며 재난 취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 취약자 매뉴얼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재난 취약자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다.

심기오 외(2010)는 재난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방재대책방안을 총체적 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그는 노인들의 경우 대피우선순위를 세분화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독거 노인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담당자 지정을 주장하였다.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력 측면에서는 재난의 취약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RFID의 설치 및 재난 상황전파를 위한 다양한 수단 강구 충분한 대피장비의 확보를 주장하였다.

이에 더불어 재난안전에 필요한 매뉴얼이나 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장한 선행연구로 권효순 외(2013)는 지체장애인들의 재난관리 욕구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책을 매뉴얼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을 지체장애, 뇌성장애 등 장애 분위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검토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구조대원들의 대응책을 도출하였다.

김윤희(2012)는 재난 취약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의 연구에 집중하였다. 이들은 재난안전 콘텐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작하여 재난 취약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달 체계별로 분류한 콘텐츠 서비스 전략을 제시하였다.

한편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관점에서 이재은(2004)은 재난관리 시스템 개편과정을 분석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재난 관리 전담기관을 조직하고, 운영방안을 재난 유형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는 재난 관리 시스템이 재난 유형에 따라 민방위, 인위재난, 자연재난, 소방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효율적인 기능의 수행이나 확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기획, 지원, 완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평가, 교육, 훈련, 홍보, 소방 및 긴급구조 등과 같은 조직을 갖추는 것이 총체적 재난관리 기능 확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2. 안전문화

안전문화의 하위변인들의 안전교육, 안전의식 및 안전정보간의 관계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특히, 안전교육과 안전의식 간의 관계성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의 결과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안전교육, 안전 의식 및 안전 정보를 다루지만, 이와 관련된 논문은 미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안전교육, 안전의식 및 안전정보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안전 교육

안전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볼 때 안전 교육은 어릴 적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유선희(2003)는 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시킨 후 교통안전지식을 평가 한 결과 실험집단의유아들이 자전거, 자동차 그리고 교통안전지식 점수에서 통제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유선미(2004)는 만 5세 유아 40명을 대상으로 10회의 안전교육활동을 한 결과 실험집단이 유아의 전체 교통안전지식 증진과 교통안전사고 증진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박희준(2002)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한 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교통안전 문제 해결 사고점수와 교통안전지식검사 점수가 높았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 고정완(2016)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지식과 생활실천능력을 길러 학생들의 안전 생활 문화를 높이는 것은 효과적인 안전교육의 전략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정명애(2002)은 학교 안전교육을 통하여 아동들의 안전생활 습관형성은 물론 학교 안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발견하고, 즉, 학교에 존재하는 위험성이 높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안전교육프로그램 중재효과 연구에서(정명애, 2004)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생활의 실천이 필요한 요소이며, 가정과 연계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수정(1997)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행동과 사고발생에 관한 조사에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안전교육은 교통안전 교육, 놀이사고, 화상사고 순으로 실시되었는데 부모가 안전교육을 강조하는 아동은 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동에 능해서 사고를 경험하는 비율이 적었다. 교육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은 지시나 명령으로 얻어진 것보다 장기간에 걸쳐 유지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아동기의 안전교육은 생활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생애 전 과정을 통하여 지속되어야 한다(이종락, 2001)

2) 안전 의식

안전 교육처럼 안전의식의 선행연구는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면에서 적절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안전의식을 다룬 선행연구(이경재, 2014; 심철우, 2013)에서는 안전의 정의를 안전에 대한 인지도라 규명하였지만 손정희(2017)에서는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예방하고, 벗어나고, 알리는 행동적 측면에서의 안전의식을 다루었다는 점이 달랐다.

현대사회에서 문명의 이기가 발달할수록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과 기능, 아전 의식이 필수로 요구된다.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안전수준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안전문화는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1997) 향상된 안전의식이 잠재적인 사고를 감소시킨다.

하지만 안전의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매우 열악하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혜숙(2001)은 안전사고의 원인을 보면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안전의식 결여가 가장 높게 나왔고 시설 불량이나 열악한 주변 환경시설도 높게 나왔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본인의 안전의식 함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안전한 환경조성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1999년 공보처의 국민의 안전의식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93.4%의 조사대상자가 안전의식 수준이 보통 이하로 생각하고 있었고 무의식적인 습관, 바쁘고 급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였다(김주영, 2001). 불안정한 조건과 행위를 통제하려면 사전에 안전 지식을 줌으로써 불안정한 조건을 배제하고 불안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찍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김영해, 2001).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이원태(2009)는 생활안전의식과 사고유발요인의 관련 연구에서 가정안전의식이 낮을수록 안전사고 경험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안전사고의 원인은 전체 대상자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62.0%이었고, 안전지식 부족 21.1%, 피로의 누적 3.0%, 안전태도 부족 2.9% 그리고 안전장치의 부족이 2.5%이었다고 보고하여 안전사고의 원인과 관련한 안전의식과 안전교육에 대한 지각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3) 안전 정보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 의식을 함양할 때 적절한 안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는 필수적이다. 한국생활안전연합(2006)은 아동안전사고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안전생활 실천행위에 대한 부모들의 실천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69.02로 나타난 부모들은 자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와 실천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박화숙 등(2000)은 안전생활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안전생활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였다고 하였으며, 응급처치법에 대한 지식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에서 불과 30% 정도의 정답율을 보이고, 아동이 인지한 학교 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학교 시설, 설비의 안정성에 대한 아동들의 관심도가 낮았다. 교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의 중요성에 대해 아동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희선(2006)은 안전지식, 위험지각, 안전생활 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안전지식과 위험지각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안전지식이 많을수록 영아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하여 민감하게 의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가정환경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정 내에 안전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안전지식과 안전실천 정도를 향상시켜 줄 필요성이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가정환경을 이루 수 있도록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생활안전 분야

생활 안전 분야를 나누는 것은 전문가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살펴보면 학교안전,

가장 안전, 전기 안전, 교통안전, 응급처치, 소방안전, 재난안전 등으로 나누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 안전과 응급처치는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생활안전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학교 안전을 다루었기에 학교 안전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전에 관하여 유추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희택(2017)은 일상생활에서의 포괄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상황에만 국한된 접근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기존의 안전사고의 대책방안이 보건환경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면 이제는 안전의식과 안전지각의 향상을 바탕으로 안전생활 실천행위를 일상 생활화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힘써야 될 것이다. 그러나 안전사고와 관련된 안전지식과 안전교육지각 그리고 안전생활실천행위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유아에서 어린이에 치중되어 있을 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송명진(2015)은 일상생활에서 안전의 중요도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중요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본인의 안전수준에 대해서도 대체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안전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장소에 관해서는 도로, 노상, 역, 정류소, 상가, 업소, 유흥시설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위협을 느끼는 시간대는 밤 8시부터 새벽 4시에 나타났다. 안전도에 관한 결과는 화재, 범죄, 교통사고, 자연재해, 건축물과 시설물, 가스폭발, 산업재해,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안감을 나타냈다.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송병길(2015)은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안전의식의 부재를 가장 큰 원인임이 나타났으며 제도와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는 본인의 무관심으로 나타났고 우리사회에 대한 안전을 위한 법과 규정을 잘 갖추지 않고 있으며 안전관련법과 규정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시민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서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재난발생시 우리사회의 대처능력 등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장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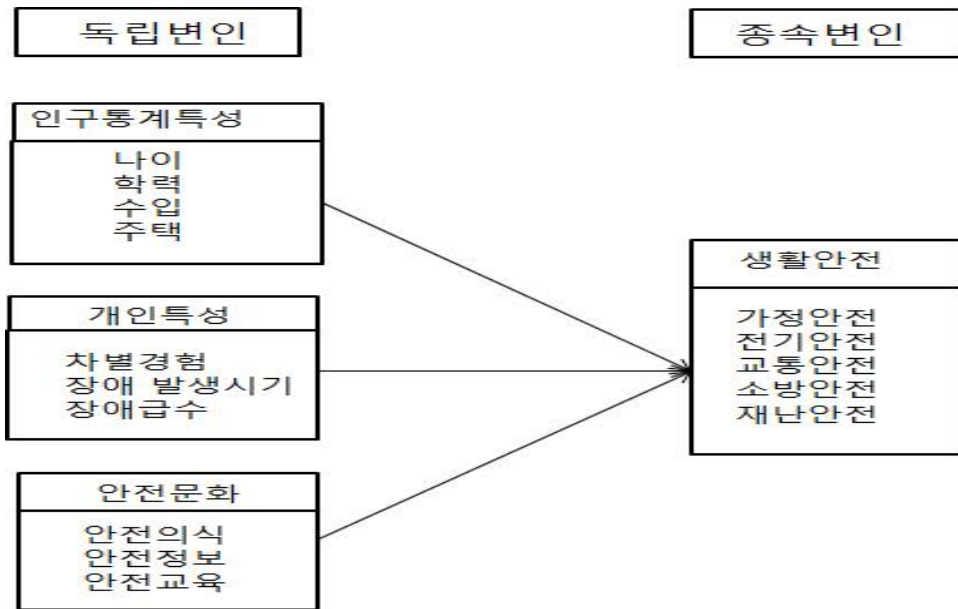
제 1 절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1. 연구 모형

연구의 모형은 인구통계특성, 독립변인 및 종속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첫째는 장애인들의 인구통계특성에 따라 생활안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는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생활안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는 장애인들의 안전의식, 안전교육 및 안전정보가 생활안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 연구 모형



2. 연구 문제

인구통계특성, 개인 특성 및 안전문화가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16)제 3조 9의 3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는바 취약계층의 한 부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삼았다. 장애인은 총 15 유형으로 분류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체장애인, 시각 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생활안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3가지를 설정한 이유는 첫째, 인구통계특성의 나이, 학력, 수입 및 주택 변인은 선행연구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별 인구통계 특성이 생활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인특성의 차별경험, 장애발생시기 및 장애급수의 변인을 통해 생활안전에 미치는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차별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리적 위축으로 인하여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애발생시기와 장애급수는 장애인의 개인상황에 대한 분류하는 기준이므로 이 기준에 의거 생활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연구의 변인으로 삼았다.

안전문화는 생활안전과 직접적으로 미치는 요인으로 이 연구의 핵심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문화의 정도에 따라 생활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지체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 개인 특성 및 안전문화는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1) 지체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은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2) 지체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 개인 특성은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3) 지체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 개인 특성과 안전문화는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시각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 개인 특성 및 안전문화는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1) 시각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은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2) 시각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 개인 특성은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3) 시각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 개인 특성과 안전문화는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3. 청각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 개인 특성 및 안전문화는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1) 청각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은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2) 청각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과 개인 특성은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3) 청각 장애인의 인구통계 특성, 개인 특성과 안전문화는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제 2 절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지역에서 100여명씩을 대상으로 삼았다.

2. 자료 수집

<표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내용

구 분	내 용
모집단	대전, 대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을 대상
전체 배부된 수	1500부
회수된 설문지 수	1193부
실제분석 대상	771부
표본 추출방법	집락표집, 무작위표집
조사 도구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
조사 방법	직접, 배부, 우편(설문조사에 대한 안내문과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실시)등
조사 기간	2017년 3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일까지 약 5주간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표준화된 설문지는, 국민안전처, 유현정(2010), 송병길(2015). 국

민안전의식지수 측정용 설문지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이용하였고 측정은 likert식 5점 등간척도로 구성하였다.

4. 통계분석

우선, 설문지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22.0을 이용하였고, 인구통계변수 및 일반적 조사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설문문항의 구성타당도 및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안전 실태 조사를 위해 기술분석 및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의 생활안전과의 관계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의 생활안전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을 분류하여 각 장애인들의 배경변인, 장애인의 개인 특성 및 안전문화를 독립변수로 해서 생활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비연속적인 변인인 나이, 학력, 수입, 주택, 발생시기, 장애급수 변인들은 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없어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미변수로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모형은 3가지로 분류하여 실시하였다. 투입방식은 전체 변수를 한꺼번에 투입하는 방식(enter)이었다.

<표 4-10> 모형 유형과 투입변수

모형 유형	투입변수
모형 1	배경 변인(나이, 학력, 수입, 주택)
모형 2	배경 변인 + 개인 특성(차별경험, 발생시기, 급수)
모형 3	배경 변인 + 개인 특성 + 안전문화(안전의식, 안전정보, 안전교육)

1. 지체장애인의 인구통계특성, 개인특성 및 안전문화와 생활안전간의 결과

지체 장애인의 인구통계특성, 개인특성 및 안전문화 영역이 생활안전의 하위변인인 가정안전, 전기안전, 교통안전, 소방안전, 재난안전 및 생활안전전체에 대해 얼마의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체장애인의 생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변인별로 살펴보면, 인구통계 특성의 나이는 재난안전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영역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지체장애인의 인구통계특성이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거의 지지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모형의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변인에 있어서 T값이 유의미한 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17> 지체장애인과 생활안전과의 관계 요약

변수			가정안전	전기안전	교통안전	소방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인구 통계 특성	나이	40대 미만					4.66***	
		50대 미만					2.73*	
개인 특성	차별	차별	-2.4*			-2.58*		
		출생지					2.28*	
	시기	10대 미만					2.185*	
		30대 이상					4.39***	2.10*
	급수	1급					-2.00*	
		2급						
안전 문화	안전의식					3.47*	2.06*	2.41*
	안전정보		2.87**				2.94**	2.49*
	안전교육		2.23*	2.88**	4.26***	4.9***	4.59***	5.54***

개인 특성에서 차별의 경험이 가정 안전과 소방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재난안전에서는 장애 발생시기와 장애 급수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활안전은 장애 발생시기 30대 이상에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에 개인특성이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생활안전의 시기 등이 일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전문화에 있어서 생활 안전 하위변인과 전체에서 안전교육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었다. 이는 지체 장애인에게 생활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재난 안전과 생활안전 전체는 안전의식, 안전정보 및 안전교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재난안전과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문화의 모든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안전문화가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하고 있었다.

2. 시각장애인의 인구통계특성, 개인특성 및 안전문화와 생활안전간의 결과

변인별로 살펴보면 인구통계특성에서 나이는 재난 안전에 영향을 주고, 학력은 가정안전과 소방안전에 영향을 주며, 수입은 소방안전과 재난안전에 영향을 주고, 주택은 소방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인구특성이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생활안전의 하위변인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지만 생활전체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 지지하지 않고 있다.

개인특성은 차별경험(교통안전)과 장애 급수(재난안전)에서 영향을 주며, 안전문화에서는 안전의식은 교통과 생활안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안전정보는 전기안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개인특성이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일부 하위변인에서 유의미하지만 생활안전 전체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지지하지 않았다.

안전문화에서 안전교육은 가정안전과 전기안전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기안전은 아무 변인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안전문화가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하고 있다.

시각 장애인의 생활안전에 미치는 영향에서 F값과 T값이 유의미한 변인만을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냈다.

<표 4-24> 시각장애인과 생활안전과의 관계 요약

변수		가정안전	전기안전	교통안전	소방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인구 통계 특성	나이					2.04*	
	40대 미만						
	50대 미만						
	초등졸	-2.59*			-2.12*		
	학력						
	중등졸	-2.34*					
	고등졸						
	수입						
	50만 미만				-1.99*	-3.00**	
	100만미만				-2.70*		
개인 특성	주택						
	아파트				2.43*		
	차별			2.48**			
	차별						
	1급					-2.79**	
안전 문화	급수						
	2급						
	안전의식			1.99*			2.37*
	안전정보	3.89***		2.36*	2.82**	2.55*	4.27***
	안전교육			3.52**	2.43*	2.57*	3.96***

3. 청각장애인의 인구통계특성, 개인특성 및 안전문화와 생활안전간의 결과

<표 4-30> 청각장애인의 생활안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T	B	β	T	B	β	T
상수		3.78		24.33***	3.78		15.02***	2.57		9.22***
인구 통계 특성	나이									
	40대 미만	-.09	-.07	-.88	-.07	-.05	-.64	-.06	-.05	-.61
	50대 미만	.17	.11	1.47	.19	.13	1.61	.11	.07	1.05
	초등졸	-.22	-.13	-1.5	-.20	-.11	-1.37	-.16	-.09	-1.23
	중등졸	-.31	-.2	-2.3*	-.3	-.19	-2.22*	-.25	-.16	-2.01*
	고등졸	-.34	-.26	-3.16**	-.31	-.24	-2.88**	-.31	-.24	-3.09**
	50만 미만	-.01	-.00	-.04	.04	.03	.29	.01	.00	.05
	수입									
	100만 미만	.04	.03	.32	.04	.03	.32	.06	.04	.54
	200만 미만	.07	.05	.61	.08	.06	.69	.09	.07	.85
개인 특성	주택									
	아파트	-.12	-.07	-1.10	-.09	-.05	-.84	-.04	-.02	-.40
	차별									
	차별				.02	.03	.39	-.01	-.02	-.37
	출생시									
	출생시				-.27	-.21	-1.88	-.27	-.21	-2.11*
	시기									
	10대 미만				-.01	-.01	-.06	-.00	-.00	-.01
	30대 이상				-.23	-.07	-.95	-.17	-.05	-.81
	급수									
안전 문화	1급				-.02	-.01	-.11	-.09	-.06	-.66
	2급				.04	.03	.31	-.01	-.00	-.05
	안전의식							-.03	-.04	-.66
	안전정보							.23	.30	4.24***
	안전교육							.19	.25	3.72***
R ²			.07			.12			.31	
adjR ²			.03			.06			.26	
ΔR^2			.07			.00			.04	
F			1.95*			1.94*			5.62***	
ΔF			1.95*			.18			13.81***	
Dubin-watson						1.56				
VIF			1.02 - 1.94			1.05 - 3.16			1.05 - 3.16	

청각장애인의 변인별로 살펴보면 인구통계특성에서 나이는 가정안전과 전기 안전에 영향을 주고, 학력은 교통안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했다. 이에 인구통계특성이 생활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에서 가정안전과 전기안전은 나이와 학력에서 유의미하고, 소방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은 학력에서 유의미하였으나 교통안전에서는 어느 영역도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청각장애인의 인구통계특성이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개인특성은 장애발생 시기에서 가정안전, 전기안전, 생활안전에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에서는 차별경험과 장애급수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시기에 있어서만 가정 전

기 생활안전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청각장애인의 개인특성이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장애발생시기에서만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안전문화에서 안전의식은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안전정보는 소방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에서 영향을 주었으며, 안전교육은 재난안전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청각장애인의 안전문화가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안전의식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안전정보는 소방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에서 유의미하고, 안전교육은 재난 안전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부분적으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표 4-31> 청각장애인의 생활안전과의 관계 요약

변수			가정안전	전기안전	교통안전	소방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인구 통계 특성	나이	50대 미만	2.34*	2.34*				
		중등졸	-2.14*	-2.14*		-2.12*		-2.01*
	학력	고등졸	-2.14*	-1.68*		-2.28*	-2.40*	-3.09**
개인 특성	시기	출생시	-2.84**	-2.84**				-2.11*
안전 문화	안전정보					2.58*	4.85***	4.24***
	안전교육		3.48**	3.48**	2.61*	2.32*		3.72***

제 5 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위의 요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별 의식의 수준과 의식의 중요성을 볼 때 청각 장애인은 안전의 수준은 높다고 여겨지는데, 의식의 중요성은 가장 낮았다. 이는 청각 장애인은 안전의 수준이 높게 지각되므로 안전의 중요도가 크게 다가오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차별 경험으로 살펴보면 청각장애인들이 차별을 가장 많이 받고, 시각 장애인은 차별을 가장 적게 받는다고 지각했다. 또한, 안전의 위협을 느끼는 장소를 살펴봐도 청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위협을 받았다. 그 이유는 청각 장애인은 지체와 시각 장애인에 비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비장애인들도 상대적으로 청각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적다고 생각해서 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접촉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상으로 전국민적인 계몽 및 교육을 통해 인권차원에서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사자인 장애인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의 안전사고의 원인에 있어서 장애인별로 볼때 시각 장애인은 법제도 미비와 관리감독의 미비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다면, 청각장애인은 안전의식의 부족과 홍보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다. 즉,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이 지각한 사고원인을 달리 지각하

로 장애인별에 맞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셋째, 인구통계특성이 생활안전과의 관계에서 지체장애인은 나이, 시각장애인은 나이, 학력, 수입, 주거지형태, 청각장애인은 나이, 학력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는 시각 장애인은 인구 통계 특성에 가장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나이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생활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연령별 혹은 장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령별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특성과 생활안전과의 관계에서 지체장애인은 차별 경험, 장애발생시기와 장애급수에서 영향을 받고, 시각장애인은 차별경험과 급수에서 영향을 받으며, 청각장애인은 시기에 서만 영향을 받는다. 개인특성에 따른 생활안전에서 지체장애인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청각장애인은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문화와 생활안전과의 관계에서 지체장애인은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안전의식과 안전정보는 비슷하게 생활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시각장애인은 안전정보가 안전교육보다 생활안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체장애인과 다른 부분이다. 청각장애인은 안전정보가 생활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는 점은 시각장애인과 비슷하였다. 반면에 안전의식은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안전문화에 있어서 장애인별 맞춤형 안전교육, 안전정보 및 안전의식의 증진할 방안을 정책적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제언

이 연구의 장애인들의 안전의식, 안전교육 및 안전정보가 생활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이다. 특히,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할때 시각 장애인들에게 읽어주는 분이 필요했고, 청각장애인들에게 수화가 필요했기에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연구는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고 결론과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일부 제한이 있다.

첫째, 이 연구는 15유형의 장애인 가운데 지체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위에서 언급했듯이 시각 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은 자신의 인지 및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하지만 중간에서 말을 하거나 수화하는 과정에서 의미전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중간 역할자의 주관적인 개입으로 인한 오차의 범위가 클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과 대상이 협소하다는 점이다. 지역은 대도시 3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대상은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 연령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의 안전의식, 안전교육 및 안전정보와 생활안전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모든 장애인별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의 연구는 양적으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질적 연구를 통해서 양적연구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의견이나 정보를 습득하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서 정책에 반영될 연구가 있어야 한다.

셋째, 대상에 있어서 성인과 아동 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발달장애인들의 보호자들의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중부지역 집중호우 재난상황에서의 재난피해 및 재난약자 보호와 시민사회의 역할」
합동세미나 자료집

발 행 일 : 2017년 8월 28일

발 행 인 : 이 재 은, 강 현 수, 김 원 용, 이 진 현, 남 궁 영

편 집 인 : 조 성, 김 다 영

발 행 처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Tel) 041-840-1296

인 쇄 처 : 금강복사

Tel) 043-273-6244